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1

인사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 여러분께

2015년 성공적인 ECCK 백서 첫 출간에 이어, 올해 역시 2020년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산업 및 규제 이슈들을 정리한 백서를 일곱 번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CCK는 국내 유럽기업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더 나은 한국의 기업환경조성에 일조하고자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이슈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해,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들에게는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은 물론 산업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10주년을 맞았으며 한국과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등 글로벌 현안에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유럽 관계의 괄목한만한 발전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동향, 규제환경,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ECCK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의 최일선에서 회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CCK는 산업별 규제와 정책이슈를 다루는 더욱 발전된 백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판은 저희에게 큰 도움과 자양 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간되는 백서를 통해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회원 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어크 루카트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1

목차

ECCK 백서 2021 인사말 p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소개 p 6

백서 사용 안내서 p 12

2021 백서 개요 p 13

2021 요약
ECCK 백서 2021 소개 p 14
머리말: 변화하는 세계 p 14
주요이슈 p 16
'로우행잉프룻 (low-hanging fruit)' 주요이슈 p 24
2020 리뷰
ECCK 백서 2020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 p 42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자동차 p 45
주류 p 56
화학 p 62
화장품 p 71
패션 및 유통 p 77
식품 p 82
헬스케어 p 87
보험 p 97
지식재산권 p 99
주방 및 소형가전 p 108
물류 및 운송 p 110
조선 및 해양 p 111

ECCK 워킹그룹 (ECCK Working Group)

항공 및 방위산업 p 115
에너지 환경 p 117
정보통신기술(ICT) p 124
조세 p 129

부록 p 13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를 비롯하여 유럽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설립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지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유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 및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고 열린 비지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의 비지니스에 있어서 유럽의 목소리를 대표하고자, 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디어크 루카트 (독일)
회장
현 쉥커코리아
대표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회장은 독일 출신으로 2015년부터 쉥커 코리아의 CE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루카트 회장은 쉥커 독일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인도의 DB 쉥커에서 다수의 관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쉥커코리아로 부임 전 까지, 일본에 위치한 쉥커세이노에서 제너럴 매니저를 맡았으며, 유럽기업협회(European Business Council)의 물류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ECCK 이사진 겸 물류& 운송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2020년 7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옌 뱅가드 (덴마크)
부회장
현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

얀 벵가드 (Jan Benggaard) 부회장은 덴마크 출신으로 2016년 11월부터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002년부터 부산에 위치한 바르질라마린시스템즈 코리아(Wärtsilä Marine Systems: 구 L-3 마린시스템즈)에서 사장으로 지냈던 얀 부회장은, 1998년 부산으로 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사업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세일즈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얀 부회장은 2005년부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감사를, 2015년부터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질 프로마조 (프랑스)
부회장
현 AXA손해보험
대표이사

질 프로마조 (Gilles Fromageot) 이사는 프랑스 출신으로 2017년 4월부터 AXA 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 지사 대표이사직 이전에 그는 AXA Global Direct사 에서 글로벌 CFO (2015-2017) 와 AXA손해보험 한국지사 CFO 및 corporate secretary직 (2012-2015)을 맡은 바 있습니다. AXA사 입사 전, 파리와 마드리드에 있는 Mazars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동희 (한국)
부회장
현 필립스코리아
대표

김동희 (Donghee Kim) 부회장은 한국 출신으로 2018년 부터 필립스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헬스케어 업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시장 부문을 관리하며 광범위한 기업 및 글로벌 리더십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헬스케어 업계 전 그녀는 딜로이트, 아서 앤더슨 등 컨설턴트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동환 (한국)
이사
현 핀에어
한국지사장

김동환 (Donghwan Kim) 이사는 한국 출신으로 2012년 부터 핀에어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08년 부터 핀에어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시작했으며, 2011년 부터 핀에어 본사에서 근무하며 한국 지사 세일즈 매니저와 본사 글로벌 상용 세일즈 매니저 등의 맡은 바 있습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스웨덴)
이사
현 IKEA 코리아
대표

프레드릭 요한손 (Fredrik C Johansson) 이사는 스웨덴 출신으로 2019년 7월부터 이케아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87년 스웨덴 엘름훌트의 이케아에 첫 입사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그는 아시아 및 유럽 각지에서 이케아 내 컴포넌트 매니징 디렉터를 포함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홈퍼니싱 시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2010년 이케아 리테일로 자리를 옮겨 중국 상하이의 이케아 쉬후이점 부점장과 베이징의 이케아 다싱점 점장을 맡았으며, 약 3년간 이케아 프랑스 부대표로 근무 후 2017년 이케아 코리아 부대표로 합류했습니다.

토마스 클라인 (독일)
이사
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및 사장

토마스 클라인 (Thomas Klein) 이사는 독일 출신으로 2021년 1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및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99년 대학 재학 중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의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부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독일 내 승용 부문 영업·서비스를 총괄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직영 유통망 승용 부문 매니징 디렉터 및 메르세데스 벤츠 중동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맡으며 기업 내 다양한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일즈와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판매와 서비스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경희 엘리자베스 (한국)
감사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

남경희 엘리자베스 (Elizabeth Kyunghee Nam) 감사는 한국 출신으로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무 및 전반적 관리 업무쪽에서 18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아지오에 오기 전, LG텔레콤, Shepard, Schwartz & Harris, 및 필리핀항공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카이야네스 베그너 (독일)
이사
현 김앤장
외국변호사

카이야네스 베그너 (Kay-Jannes Wegner) 이사는 독일 시민권자이며 독일 및 영국 변호사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유럽국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카이야네스 이사는 2001년부터 2007까지 런던에서, 2007년부터 2011까지 싱가폴의 다국적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국

크리스토프 하이더
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총장은 2013년 6월 1일부로 현직에 취임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 (Bayer AG)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지사에서 회계부서장을 한국지사에서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하이더 총장은 2016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Heider-Kober Foundation의 이사회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European Union Domestic Advisory Group 및 Korea-EU Civil Society Forum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보선
부총장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김태양
과장, 화학 위원회
박안숙
이사,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김시윤
과장, 금융산업 위원회
서효경
이사, 식품/주류/주방및소형가전 위원회
나은성
과장, 지식 재산권/패션 및 유통 위원회
정누리
부산 지부장
심혜원
과장,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최효은
과장, 경영지원부
조혜은
과장, 멤버십 관리
조소현
과장, 홍보&커뮤니케이션
신지현
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업소개

위원회, 워킹그룹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 워킹그룹 및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는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비지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정보교류의 구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지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서
- 기업환경조사 보고서
- 유럽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 (ECCK Annual Report)
- 한-유럽 경제 분기보고서 (ECCK Quarterly Report)
- 월간지 (ECCK Connect Magazine)
- 회원명부
- 뉴스레터 (주간 & 월간)

EU 프로그램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왔으며, 일부 홍보 및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EU국가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EU Gatew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보고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저희 상공회의소는 EBO Worldwide Network ASBL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CCK 백서 2021 사용 안내서: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

해당 백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114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기업환경 및 규제 환경을 조성에 일조하고자 ECCK의 16개의 산업별 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양측 정부간의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해당 백서에 제기된 모든 이슈는 관련 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주요이슈
규제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소개.

2021 건의사항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권고사항 설명 소개.

관련규정/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이 작년 백서에 이어 '재건의' 또는 '개정' 되었거나 2021년에 '신규' 로 포함된 내용임을 나타냄.

1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공고 시점 개선

현재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절차에 따라, 해당 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이 당해 년도에 공고가 되어, 자동차판매사가 해당 년도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자동차판매사의 전기차 판매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자동차판매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못해 기존에 수립된 해당 년도의 전기자동차 판매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은 최소 해당 년도 6개월 이전에 공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사항이 당해 년도의 자동차판매사의 전기차 판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해당 년도의 최소 6개월 이전에 공고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021 백서 개요

ECCK 백서 2021 소개

ECCK백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연례 주요 간행물입니다. 2015 년에 첫 발간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시장 접근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산업 문제의 본질을 포착하고 한국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하기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자유 무역 협회(EFTA) 사무국, 유럽 연합(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 정부, 다양한 유럽 기업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세계 무역기구(WTO)와 같은 다국적 조직의 핵심 인력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서는 ECCK 사무국과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취합한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으며, 약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2021년도 백서 출판에 기여하였습니다. 해당 백서는 16개의 ECCK위원회 및 워킹 그룹 (2020: 20개)을 통해 제기된 114개의 건의사항 (2020: 145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CCK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사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서의 출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CCK는 한국 정부, 특히 옴부즈만 김성진께서 이끄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행정 기관들과 논의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며, ECCK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ECCK는 2020 년에 제출된 145 개 건의사항 중 약 43 개 (30 %)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ECCK는 한국 정부와의 더욱 강화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협력을 희망합니다.

머리말: 변화하는 세계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시작됐지만 기업과 일반인은 여전히 감염병 제어를 위한 정부의 시행 조치들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로 인해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위기 직전의 2020년의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7월 말부터 하루 1,500건 이상 확진자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초청을 받아 호주, 인도, 남아공의 정상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올해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려져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올해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한 P4G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02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으며 변화의 과정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유럽 그린딜과 한국판 뉴딜은 아직 길고 고된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박차를 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를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정치적 결정은 훌륭합니다.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반면 기업은 기술과 혁신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 그린딜과 한국판 뉴딜을 지지합니다.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최고의 기술의 시장 도입을 마다할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년간 ECCK는 완전한 국제 표준의 준수 및 시험 절차 상호수용 등을 지지해 왔습니다. 끝으로 국내 맞춤형 규제 및 제도가 기업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것으로 올해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서 목표 달성률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2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표준과 규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전이 아닌 릴레이 경주이며 강한 협력과 협동심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ECCK 백서 2021에 제안하는 총 114개의 이슈들을 **'정책(P)'** 또는 **'규제(R)'**로 분류하여 아래 목록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책'관련 이슈는 한국 정부 및 국회에 제기하는 특정 계획 수립 · 시행 또는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한 산업별 이슈들을 뜻합니다. 반면 **'규제'** 관련 이슈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정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별 이슈들을 뜻합니다.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주요이슈

자동차 위원회

1. 결함 시정 대상 범위의 개정- 판매 전 차량에 대한 결함 시정	R
2. 누적 수리 기간 산정 시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R
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건의 남소 방지를 위한 중재 신청 수수료의 도입	R
4. 중대한 하자/일반 하자의 정의 명확화	R
5. 자동차제작자 제출 자료 범위 개정	R
6.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R
7. 신기술 혹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한 허용	R
8.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R
9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 관련 처벌 규정의 개정	R
10. 자동차 평균 배출량 규정에서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슈퍼크레딧 제도 도입	R
11.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명확화 및 국제조화	R
1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공고 시점 개선	R
13.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기간 부여	R
1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R
15.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검토	R
16. 자동차 인증 지연 개선을 위한 심사 절차의 명확화	P

주류 위원회

1.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R
2. 종량세 적용대상 주종 확장 계획	P
3. 주류 방송광고 시 알코올 도수 제한 재검토	R
4. 주류 경품제공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의 제한적 허용	R
5. 재활용 등급 표시 예외제품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단가 차등 적용 재검토	R
6. 병행수입식품에 대한 주류 거래 질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요청	P
7. 주류 전자상거래 허용 요청	P

화학 위원회

1.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시 WTO 협정에 따른 기술규정 통보 의무 이행	P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등록 자료 제출 시 구성원 승인	R
3. 모기기피제 향료 변경 시 허가절차 완화	R
4. 표면처리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위해성 조사 제외	R
5. 위탁생산(OEM, ODM 등) 제품의 MSDS 작성·제출·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 주체 및 공급자 정보 기재	R
6.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MSDS작성·제출·영업비밀 신청: 시스템상 MSDS 번호연계	R
7. MSDS 제출 유예기간 적용 기준	R
8. 소량 연구개발용 제품의 영업비밀 신청 제외	R
9. MSDS 비공개 심사: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류 인정	R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10. 살생물제품의 승인 중 승인 취소에 따른 수입·판매 경과 조치 필요	R
11. 살생물제로도 관리되고 있는 살균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R

화장품 위원회

1.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P
2.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R
3.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R
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R
5.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R
6.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R
7.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R
8.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R
9.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R

패션 및 유통 위원회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R
2.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	R
3.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및 분리배출 표시	R
4.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기준	R
5. 수입 식품용기의 안전성 검사	R
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등록 및 승인 기준	R

식품 위원회

1.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천연 표시	R
2.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R
3.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표시 개선	R
4. Non-GMO 표시 기준 완화	R

헬스케어 위원회

1.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급여등재 및 약가 관리 제도 개선	R
2. 위험분담제 재재평가제도의 형평성 개선 및 국제적 조화 필요	R
3. 공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R
4. 혁신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 고려	P
5. 희귀 난치암환자 약제 접근성 강화	R
6.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P
7. 백신 포함 생물학적 제제의 중복적인 GMP평가 및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한 EU-한국 간 상호인정협정 진행	R
8. 투명한 데이터 공유 요청 -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자료	P
9.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절차의 표준화	R
10. 공중보건 혁신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위한 백신의 가치 인정	R
11. 예방접종비 제도 개선	R
12. 백신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	R
13. 동물유래 시약의 동물검역절차 간소화	R
14. 필러 관련 사용 전후 사진 사용	R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보험 위원회

1.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	R
2. 약물 · 마약 등의 상태로 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약관 적용	R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의 제출 및 발급 의무화	R

지식재산권 위원회

1.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P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P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P
4. 재판매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P
5.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P
6.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P
7.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P
8. 유사상품에 대한 단속	P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	P
10.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P
11. 표준필수특허	P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1.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전자문서화 및 인증데이터 검색 개선	R
2. 개정되는 규제 및 법안의 적용시기 정례화	P

물류 및 운송 위원회

1. 직접운송 일반 요건의 현대화	P
2. 환승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P

조선 및 해양 위원회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P
2.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획	P
3. 주52시간 근무제	R
4.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해양산업 연구개발비 지원 및 프로그램 접근의 불공정성	P
5. 코로나 19 대응책	R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1. 절충교역 이행 기간 연장	R
2. 절충교역 이행 보증	R

에너지환경 워킹그룹

1.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업체 간 원재료용 천연가스 직접계약	R
2. ISO 14025에 준한 EPD에 국내 인정	R
3. 해상 풍력터빈 인증 시 IEC 인증 허용	R
4. 육/해상 풍력 발전의 장기고정가격 전력수급계약(PPA) 절차 개선	P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5. 직접 PPA시 REC 가중치 적용 개선	R
6. 육/해상 풍력발전 시 일관성 있는 민원해결 가이드 마련	P
7. 탄력성 있는 연료사용 및 효율 증대를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P
8.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규제 완화 (RI 라이선스 허용 범위 확대)	R

ICT 워킹그룹

1.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간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	R
2. 정부 ISP 프로젝트 기획, 개발, 제출을 위한 시스템 및 견본 구조	P
3.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P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권고	P
5. 공공기관의 외국계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R
6. 이동통신 주파수에서의 활용 기술의 중립	R

조세 워킹그룹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관으로 인정되는 단체(투자단체)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마련 필요	R
2. 외국법무법인의 비거주자 파트너 관련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및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	R
3.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R
4.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R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의 간소화	R

6.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R
7.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보세화물의 관세 면제요건 신설	R
8. 면세점에서 반품되어 수입통관되는 면세품에 대한 관세 감경	R

‘로우행잉프룻 (low-hanging fruit)’ 주요이슈

‘로우 행잉 프룻 (low-hanging fruit)’은 직역으론 ‘낮은 곳에 열린 과일’을 뜻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실’, 즉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과제’로 풀이됩니다. ECCK는 2021년도 백서에 포함된 총 114개의 건의사항 중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개선이 가능한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위원회

5. 자동차제작자 제출 자료 범위 개정 p 47

주류 위원회

1.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p 56
5. 재활용 등급 표시 예외제품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단가 차등 적용 재검토 p 58

화학 위원회

1.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시 WTO 협정에 따른 기술규정 통보 의무 이행 p 62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등록 자료 제출 시 구성원 승인 p 63

화장품 위원회

6.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p 74
7.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p 74

패션 및 유통 위원회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p 77

식품 위원회

3.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표시 개선 p 84

헬스케어 위원회

8. 투명한 데이터 공유 요청 -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자료 p 92
9.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절차의 표준화 p 93

지식재산권 위원회

5.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p 102
7.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p 103
8. 유사상품에 대한 단속 p 104

조선 및 해양 위원회

2.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획 p 111
5. 코로나 19 대응책 p 113

2020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이슈 및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45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규제이슈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과 ECCK의 조치계획은 아래 산업별 분야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위원회

1. 자발적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 제작결함 시정 대상 범위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자동차교환환불 요건의 누적수리기간 30일 기준에 대한 합리적 보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권한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5.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Code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한-EU FTA / 한-영 FTA 부속서 최신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유럽 형식 승인 자동차에 대한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8.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제도의 법률에서의 규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제작자동차 배출/소음 인증 관련 불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보고·관리 항목의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2.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의 중장기 로드맵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4.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의 초과, 미달 실적에 대한 유연성 방안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5. 중고차동차 판매업,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6. 자동차 관련 유사/중복 규제를 조사해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주류 위원회

1. 시음 허용량 기준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RFID 시스템을 통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 공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스마트오더 디지털 경품 홍보 및 할인 허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병행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입자 규제 강화, 브랜드 자산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주종별 소비자경품 한도를 주종에 상관없이 세제별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을 직전 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7.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화학 위원회

1. 화학제품 관련 규제 제·개정에 대한 TBT 알림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화학물질 중복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 금지물질 수입 절차 중복 규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기존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QSAR 자료 제출 톤수 제한 삭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6.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구체적 근거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8. 식약처 이관 의약외품 승인에 대한 시험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연장 또는 검토기한 축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허가 요건에 대한 가이드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1.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의 검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3. 화관법 내 유사규제: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화장품 위원회

1.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요청 및 합리적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재활용 용기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 합리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 천연관련 표시광고 허용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5.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적용기준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패션 및 유통 위원회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식품 위원회

1. 표시기준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 천연/합성향료 표시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천연/합성향료 기준규격 및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4.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합성수지제 범위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6.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헬스케어 위원회

1.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글로벌 혁신신약 가격우대 정책의 현실화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중복적인 약가인하 기전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위험분담제의 운영의 예측성, 투명성 및 유연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희귀질환, 희귀 암환자 약제 접근성 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8. 중증 암환자의 빠른 약제 접근성을 위한 항암제기금의 조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9.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협의체 구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0. 항암제 급여 검토 시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1.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요건 및 심사기간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2. 약가 협상 시 약가합의서 및 이행관리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3.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4. 실거래가 조사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5. 공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7.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맞는 국내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변경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8. 유럽연합과의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백신과 생물학적제제 우선 적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9. 독감백신의 신속 국검 및 위해도 평가기준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0. 예방접종비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1. 공중보건을 위해 백신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2.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변경 된 항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3.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시험에 사용하는 동물 시험법 대체의 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4. 국내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 항목에 대해 필요성 재검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5. 제조품질관리 관련 보완자료의 요구 수준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6. 완제의약품의 출하 승인 규격과 유효 기간 규격 분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7.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국제기준조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8.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재검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9. 임상시험 변경승인 절차 개선 및 일괄적용에 대한 공식절차 및 가이드라 인 구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0. 허가 변경 시 변경 내용에 따른 보고 방식 범주화 및 구비요건의 수준 간소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1. BSE 자료제출 관련 전자 서명 허용 및 공증 기준 완화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상황 점검

32. (의료기기)필러의 관리범위 명확화를 위한 별도 분류 체계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험 위원회

1.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 공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대인배상II 치료비 전액지급제도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자에 보험회사를 추가하도록 명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지식재산권 위원회

1.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협력 부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지식재산 범죄에 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국경조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관세청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 효율성 제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8. 유사상표 단속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9.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저작권 및 사용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1.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기술 수출 관련 규제의 모호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3.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1. 가정용 압력솥 표시사항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KC 인증서 전자문서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물류 및 운송 위원회

1.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보고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운임공표제 실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 대행업 겸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직접운송 요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5. 중계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조선 및 해양 위원회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간접손해에 대한 공급 업체 보상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3조 관련 법적 책임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4조 관련 절충교역 이행 보증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1. 기존 도시 가스 사용 중인 업체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허가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업체 간 천연가스(NG) 직접 계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4.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표준 플러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5.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규제 완화 (RI 라이선스 허용 범위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6. 탄력성 있는 연료사용 및 효율 증대를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계약방식 변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8. 국산 – 외산 풍력기자재에 대한 REC 계약금 차별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프로세스의 일원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0.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차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1.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건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인적자원(HR) 워킹 그룹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조치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중소기업 혜택 적용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 장애인 고용 촉진 제고 방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ICT 워킹그룹

1.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권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공공기관의 외국계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조세 워킹그룹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요건 완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외국법무법인의 비거주자 파트너 관련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및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이동 제한, 격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 국내체류가 연장되어 이로 인한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불명확한 서면심사 기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조치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6.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관세 평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명확한 소득구분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8. 주택비용 관련 소득·세액공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9.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소득 신고 시 국외 발생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항목 포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1. 채권 할증발행비용 국내외 소득신고 시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2.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3. 국내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준용 기준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4.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15.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6.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7.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외국단체의 실질귀속자 판정기준(특례)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관광 산업 워킹그룹

1.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적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ECCK 백서 2020' 주요이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위원회/워킹그룹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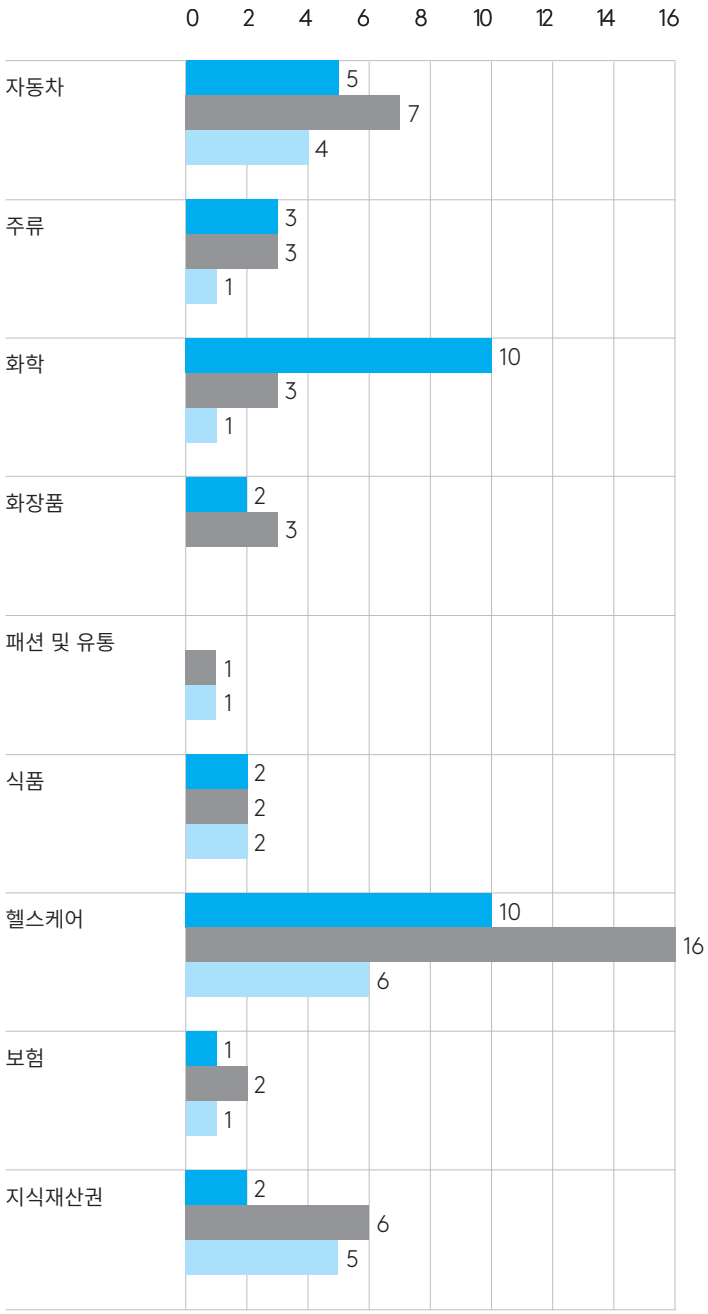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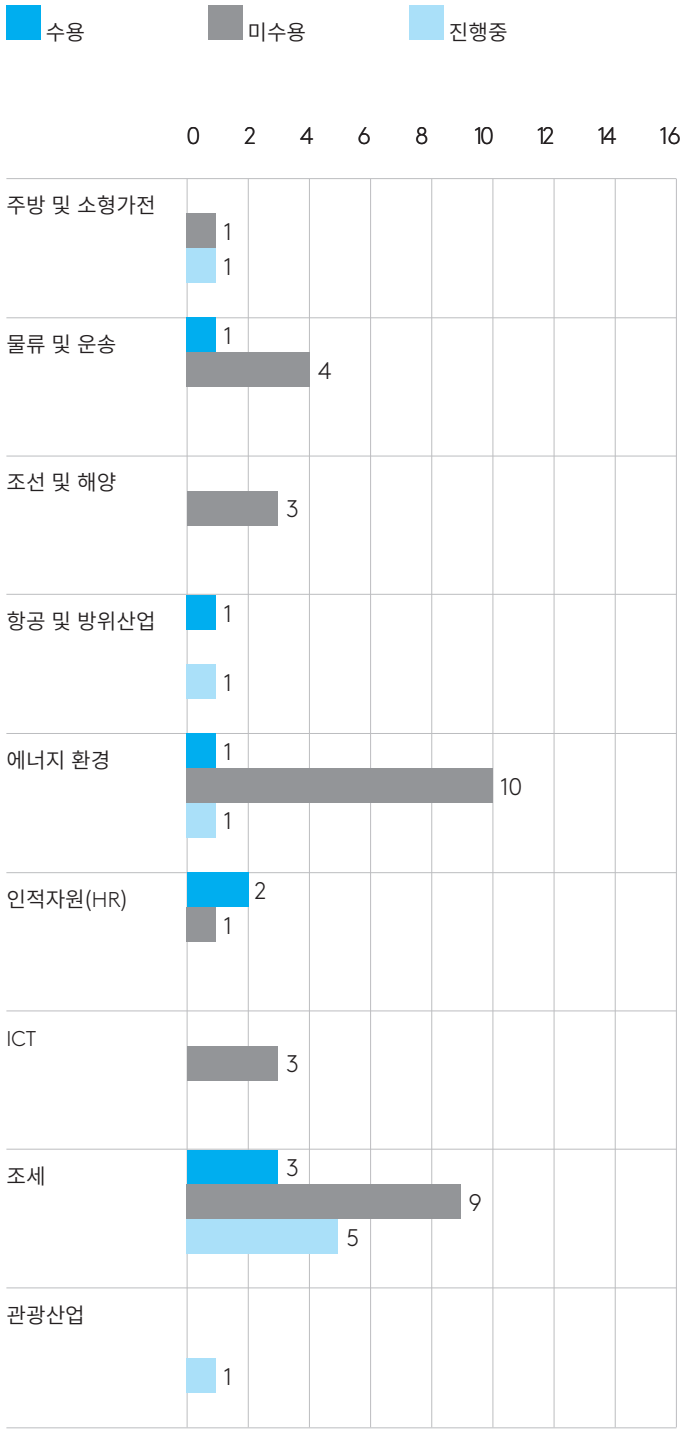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위원회

주요이슈

1. 결함 시정 대상 범위의 개정- 판매 전 차량에 대한 결함 시정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있는 차량이 시정 조치의 대상이어야 하나, 수입 차량의 경우 제작의 의미를 수입(통관)으로 간주해 판매 전인 차량도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정 조치의 절차를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정 조치의 대상이 모두 판매되기 전의 자동차라 해도 해당 자동차가 시정 조치의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대상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특히, 판매 전 차량은 시정 조치 절차상 요구되고 있는 고객 통지서 발송과 신문 공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2. 누적 수리 기간 산정 시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1회 이상 수리 후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리 기간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자동차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으로 누적 수리 기간의 예외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중재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1-3) 항목에는 수리 기간을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 누계 일수에서 제외되도록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업의 기간을 누계 일수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누적 수리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제작자가 실제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누적 수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자동차 및 부품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누적 수리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부품 수급 기간 동안 소비자 (차량 소유자)에게 유사 대여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 경우 이를 누적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건의 남소 방지를 위한 중재 신청 수수료의 도입
간편 절차 및 무상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중재 신청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중재를 방지하고, 제도 운용 향상을 위한 비용 확보 차원에서 중재 신청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유사 제도에서의 사례를 보면, 의료 중재의 경우, 조정/중재 신청 시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초 비용의 목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소모적이고 타당하지 못한 중재 방지의 일환으로, 중재 신청 시 인지세 형태의 중재 신청 수수료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4. 중대한 하자/일반 하자의 정의 명확화
현행 중재 규정 22조(교환 또는 환불 요건) 1항 3호에는 총 8개의 장치 및 차체에서 발생한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그 외 장치 및 구조에서 발생한 하자를 일반 하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재 신청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그동안의 중재 선례에 근거하여,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22조 1항 3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5. 자동차제작자 제출 자료 범위 개정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매월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 기술정보자료, 화재 및 사고 관련 분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 제작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함인데, 현재 제출하고 있는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에는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의 제외 또는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기점검 수리 내역'은 엔진오일 또는 소모품을 교환한 내역으로 차량의 결함 및 하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정조치 수리 내역'은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내역이고, '대상이 명확한 무상 수리 내역'은 제작사에 의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내역으로, 이러한 수리 내역들도 본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정보들은 기술정보자료의 형태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복되어 제출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제작자 제출 자료 범위에서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 없는 무상수리 자료를 제외하거나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자동차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치는 2.55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2.55m 너비 기준으로 제작된 유럽의 버스 및 일부 트럭 차량은 국내로의 수입이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 너비 기준은 도로 설계 기준과 연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내

차로에 대한 폭 기준은 3.0m-3.5m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 조건에 따라 차로 폭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해서 유럽의 자동차 너비 기준인 2.55m에 해당되는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전기버스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유연성 부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자동차 등 제한적인 차종에 대해서 2.55m 너비 기준을 허용하는 유연성 부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자동차에 대한 2.55m의 자동차 너비 기준 허용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7. 신기술 혹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한 허용

수입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규칙) 제114조의 2에 따라 신차에 적용된 신기술 혹은 새로운 특성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승인의 거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규칙 제114조의 2는 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보다 한층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새로운 장치가 승인되는 조건이 기존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장치보다 더 우수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반면 한-EU FTA의 부속서 2-다 제6조는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부속서 2-다 제6조에서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는 것을 결정할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동차제작자에서는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의 신기술 및 새로운 특성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경우, 자동차 규칙 제114조의 2보다 한-EU FTA 부속서 2-다 6조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형식승인 면제가 내려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에 대해 특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국에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거절하는 경우, 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EU 측에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의2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8.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한-EU FTA 협상 시, 협정문 부속서 2-다-1에 있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석 안전띠 부착에 대한 안전 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은 한-EU FTA 부속서에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UNECE의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는 부속서 적용대상에서의 제외됨으로 인해 FTA 부속서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의 안전기준에 맞는 사양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고 있으며, 더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 자동차제작자와 국내 소비자 모두 FTA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가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EU FTA 관련 조항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9.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 관련 처벌 규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변경인증 위반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수입자동차제작자는 국내자동차제작자와 다르게 변경보고

위반의 사유로 관세법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변경보고는 그 보고의 대상이 환경으로의 영향이 없는 변경 사항이므로, 환경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에서의 의무 미이행과 그 처벌 기준에 있어서 비례성과 정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의 사례에서는 변경승인/허가와 변경보고/신고를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전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칙을, 후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의 제재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 변경인증 미이행은 벌칙, 변경보고 미이행은 과태료 등 형사처벌 외의 제재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10. 자동차 평균 배출량 규정에서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슈퍼크레딧 제도 도입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를 통해 제작차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는 매년 판매된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정해진 배출가스 기준에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현행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에서는 연간 판매 대수 계산 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판매량은 정해진 배수로 계산하는 슈퍼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제작자의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평균 배출량 규정에서도 수소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해서 판매대수를 일정 배수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슈퍼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배출량 규정에서 슈퍼크레딧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다른 제도에 존재하는 슈퍼크레딧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비재정적 수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의 친환경차 보급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의 달성과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국가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평균 배출량 규정에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슈퍼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11.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명확화 및 국제조화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제도 도입 후 온실가스 산출을 위한 국내 자체 프로그램 (HES)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산출 프로그램(VECTO)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계 상용자동차제작자는 HES 가 VECTO와 프로그램상의 차이로 인해 동일 차량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목적 중 하나인 상호 완전한 시장 접근 보장을 위해, 국내의 새로운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 HES가 유럽산 상용차의 한국으로의 수입 장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HES와 VECTO의 결과값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완성차(적재함이 없는 카고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사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미완성차에서의 배출량은 최종 완성차량에서의 실제 배출량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완성차로 배출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기준과 조화된 표준화된 시험 방법(적재함 및 적재량 선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유럽의 VECTO 입력 값을 기준으로 HES 값을 산출하여 VECTO와 HES의 계산 결과값 차이를 상호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내 운행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고트럭의 경우, 완성차에서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및 신고하여 배출량이 현실적으로 신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성차 상태로 카고 차량을 수입하는 수입자동차제작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의 VECTO와 같은 국제적 기준과 조화된 배출량 산정 방법(시험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공고 시점 개선

현재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절차에 따라, 해당 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이 당해 년도에 공고가 되어, 자동차판매사가 해당 년도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자동차판매사의 전기차 판매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자동차판매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못해 기존에 수립된 해당 년도의 전기자동차 판매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은 최소 해당 년도 6개월 이전에 공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사항이 당해 년도의 자동차판매사의 전기차 판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해당 년도의 최소 6개월 이전에 공고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3.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기간 부여

저공해/무공해 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그 다음 연도의 차량 판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목표 미달성 시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자동차판매사의 경우 본사에서 시의적절하게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공포일로부터 최소한 2년가량의 준비 기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급목표 공포의 지연은 수입자동차판매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저공해/무공해 자동차의 시의적절한 국내 보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한 3개년 목표 계획(2023년~2025년) 이 2021년 이내에, 늦어도 2022년 초까지는 공포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58조의 2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4.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에 있는 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목록에 신규 차종들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각 모델이 규정 내에 직접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매번 개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를 신청한 때부터 고시 개정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가 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해/무공해자동차)를 적기에 보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연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고시한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서는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이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로 명시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차종들을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식의 탄력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차종 등재 시 빈번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력과 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 차종들을 일일이 등재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재와 같은 별도의 탄력적인 운영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2조에서 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로의 개정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15.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검토

현재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유럽계를 비롯한 수입자동차제작자의 추가적인 사업 진출 및 확장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자동차제작자의 고객 만족과 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관련 분야이며, 이를 위해 수입자동차 해외 본사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 제한은 한-EU FTA에서 명시하는 양허 사항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럽계 수입자동차 기업에 대한 사업 제한은 국제 통상 측면으로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자동차의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분야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매입과 상당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서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와는 연관이 적다고 보입니다.

건의사항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16. 자동차 인증 지연 개선을 위한 심사 절차의 명확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 인증과 관련하여 자료 등을 제출할 때, 인증 심사 기관의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부족하여 검토 내용 및 기한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검토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이전과는 상이한 법규 해석을 받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인증이 지연되고 수입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가 과도하게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일관된 법규 해석을 위해 인증 절차 및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검토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당 절차의 투명화 방안이 추진될 것을 요망합니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류위원회

주요이슈

1.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업체에게는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스마트오더의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를 경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주류를 선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류 자판기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편의에 비중을 두는 주류 판매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인인증 및 본인인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주류 판매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코로나19 상황 하에 구매자와 수령자의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즉, 제3자 수령이 가능하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하거나 재해석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3자 수령 시 성인인증 및 본인인증 이후 수령하고, 배송대행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현재 전통주 판매 시 작성하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관련부처 국세청 (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2. 종량세 적용대상 주종 확장 계획

2020년 1월 1일부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표준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주세 과세 표준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목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인 만큼 전 주종의 조세 형평성을 실천하는 것이 종량세 개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019년 종량세 적용 발표 당시 현실적으로 전 주종을 대상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맥주와 탁주를 먼저 적용시키고

다른 주종으로의 확대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설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전환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가 기업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과세체계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계획이나 방향 수정 등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주종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검토 여부 등 정부 당국의 계획을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주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3. 주류 방송광고 시 알코올 도수 제한 재검토

국민건강증진법상 방송광고가 가능한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17도 미만입니다. 이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최초로 정해졌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당시 소주 및 증류주의 도수가 20도 이상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표적인 증류주인 소주[1]의 알코올 도수가 17도 미만이며, 대부분의 소주 브랜드가 방송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높은 도수 제품도 연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관점에서도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1998년 WTO 분쟁 판정에 인용된 GATT 1994의 협정 내용[2]인 같은 제품(증류주)에 대해 자국의 물품과 수입 물품에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국민건강증진 및 규제의 공정성 관점에서 방송광고 알코올 제한 도수인 17도에 대해 규제 시행 25년 동안 변화한 사회, 시장 및 제품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 소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국내 증류주의 98%는 희석식 소주, 국내 모든 주류 판매량 중 35% (IWSR 2020)

2. 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75_e.htm

4. 주류 경품제공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의 제한적 허용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제1호에서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 ·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주류에 경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주세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경품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가액과 총액 한도를 설정하였고 주류 보냉백과 같이 제품의 품질유지와 관련된 것은 가액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품액 한도에 따라 기업은 제품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컵, 오프너 등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지만 관련 내용을 홍보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혜택에 관련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홍보 및 마케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주류 업체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주세법에서 허용하는 경품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5. 재활용 등급 표시 예외제품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단가 차등 적용 재검토

포장재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공지한 21년도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차등 적용방안에 따르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에 속하는 와인 및 위스키 품목에 대해 분담금 단가의 20%를 할증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인과 위스키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한 병색깔이나 기능성 병뚜껑 등이 품질유지 및 식품안전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포장재와 포장방법임을 인정받아 표시의 적용 예외를 받았으나, 오히려 분담금은 다른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 가짜 양주 방지용 특별 장치를 환경부의 포장재질 기준에 맞춰 재활용이 용이한 등급으로 바꾸기 위해 제거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탈세 등의 목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와인과 위스키 포장재가 '재활용 용이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용이성 표시 예외를 적용 받은 바, 다른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와 차별하지 않고 분담금을 동일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병행수입식품 소비자 안전 관리 및 책임 소재 강화 요청

최근 병행수입 및 해외 직구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류 제품 또한 병행 제품과 해외 직구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거래의 행태가 시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식약처 등 8개 부처의 한글표시사항 관련 규정 위반 사례들이 자주 확인되고 있으며, 수입 전 신고 과정에서 제조 공장 등록과 제품 성분 증명서 제출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조물배상책임(PL) 미비로 제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제품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의 브랜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구입한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도, 제대로 식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의 제품이 편법적으로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 관리에 위험을 주는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 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과 27조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과 더불어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준수 여부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병행수입제품의 국내 유통 시 소비자 불만, 안전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조물배상책임 (PL) 보험 가입 등 수입 신고 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망됩니다.

개인 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정식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큼 이상 구매 패턴 등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수입유통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7. 주류 전자상거래 허용 요청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제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더 많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류 산업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류의 전자상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가려져 있는 해당 산업의 경제성 및 고용 창출의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류 통신판매는 전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채널에는 면허 및 고객서비스와 관련해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채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에 한국과 폴란드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통신 판매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주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배송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변 경쟁국들은 주류 전자상거래를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이 명확하고, 과도한 규제의 부담을 줄여 해당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 부분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타국가의 적용을 통해 주류의 전자상거래의 허용이 기존 소매 시장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보다는 브랜드의 각 판매 채널별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제품이 더욱 다양하게 출시되며 이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여러 산업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향후 팬더믹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크게 소비의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은 분명합니다. 주류의 전자상거래 허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기존의 소매/음식점 등에 기존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는 기존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고용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대면 거래만 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의 확장이기에 코로나19의 위기관리 방향에도 부합하고, 기업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류 관련 규제가 다양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전통주 판매 촉진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였고, 주류 통신판매 규정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전면 확대는 이와 같은 차별적 요소를 없앨 수 있고, 주류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등이 조건 없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가 적용된 전자상거래와 판매채널의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성 증대, 세수확보 투명성 및 준법성 증대, 책임 있는 구매 및 건전 음주 문화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의사항

기존의 주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모든 종류의 주류(예: 맥주, 과실주 및 증류주)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참여 및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구매의 중심 축인 전자상거래가 주류 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관련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로 구매/수령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관련부처 국세청 (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태양
과장,
화학 위원회

화학위원회

주요이슈

1.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시WTO 협정에 따른 기술규정 통보 의무 이행

국내 화장품, 의약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TBT 알림 사항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6월18일까지 국내 화학관련 법령 및 고시와 관련한 70여건의 입법·행정예고가 발생하였지만 4.3%에 불과한 3건만 TBT 알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동 기간 국내 화장품 관련 입법·행정예고 14건 중 35.7%인 5건의 TBT알림이 완료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해외 이해관계자들은 TBT 알림을 통하여 국내 규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식적인 의견 제출 및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우 고도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화학제품의 수입, 제조, 라벨링, 시험기준 표준에 영향을 주는 국내규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한 TBT 알림의 필요성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화학규제의 경우TBT 알림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아 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TBT 알림이 진행된 경우에도 20일이라는 짧은 의견 수렴기간만 주어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무역규제 환경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국제 수준과의 비조화 규제들로 인한 국내 화학시장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WTO 회원국간 규제 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 두 가지를 각 부처에 요청합니다.

i. 성실한 TBT 알림 이행: 화학물질 및 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포함)의 등록, 평가, 승인, 안전확인, 함량기준, 시험방법 및 기준, 분류 및 라벨링, 수입절차,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신청 등에 영향을 주는 법규 또는 고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ii. 적정한 의견수렴 기간 부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 및 고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는 최소 60일, 행정예고는 최소 40일 부여

관련규정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물질연구과)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등록 자료 제출 시 구성원 승인

대표자가 공동등록 자료 제출 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협의체 멤버의 등록여부 확인과 공동제출 구성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 따르면 대표자가 등록 서류 제출 전 모든 구성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등록 구성원 승인'을 진행해야 하며, 미승인 구성원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승인여부로 공동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표자에게 미승인 업체는 공동등록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등록은 대표자가 등록을 완료한 후, 구성원들의 물질의 분류표시, 유해성시험결과, 최종 비용, 부여된 유예기간 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공동등록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등록 여부를 임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등록 구성원 승인'은 자료 제공 기능과 연동되어 있어 1,0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이거나 적극적 멤버라고 하더라도 자료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건의사항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등록할 때에도 공동등록 구성원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대표자가 자료제출 시 과학원의 검토대상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청합니다:

- 대안(1) 공동등록은 협의체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으로 구성원 등록여부 확인과 승인 여부가 대표자의 공동등록 자료 제출 시 검토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함.
- 대안(2) 협의체시스템에서 구성원 승인 여부로 공동등록 여부를 확정하고자 한다면 구성원 승인과 동시에 공동등록 자료가 구성원에서 자동적으로 이관되는 것을 분리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함.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부처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모기기피제 향료 변경 시 허가절차 완화

의약외품인 모기기피제는 식약처에 안전성·유효성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까지는 기허가 제품과 유효성분·규격·분량 등이 동일한 경우, 식약처에서 고시한 방법(「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된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이에 기허가 받은 모기기피제에서 향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9년 고시 개정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기허가 제품에서 향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즉, 기허가 받은 모기기피제의 향을 변경할 때 현행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모기기피제 표준제조기준인 '모기의 기피'인 경우 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나, '모기·진드기의 기피'인 경우는 진드기 기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식약처의 검토를 완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기 허가 받은 동일한 조성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의 의무가 다른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기허가 받은 모기기피제에 대하여 제품 전체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착향제를 변경할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품목허가·신고 되어있는 타 의약외품의 경우 착향제만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금지·제한원료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향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EU에서는 향료, 색소 등만 상이한 경우 당국에 신고없이 출시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비활성성분 목록에 등재된 향료(1,538종)로 변경하는 경우 신속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3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4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모기기피제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표면처리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위해성 조사 제외

표면처리된 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1항 6호의 면제 기준에 부합될 경우 등록 면제가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고 있어 면제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인하여 결국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면처리된 물질은 대상물질과 표면처리 물질이 표면에 위치한 작용기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로 표면처리 대상 물질의 거시적입자 대부분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 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국내 화평법에서도 표면처리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의 등록 의무를 이행한 경우 표면처리된 물질은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 1항에 '4. 표면처리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를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통지 받은 경우 15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위탁생산(OEM, ODM 등) 제품의 MSDS 작성·제출·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 주체 및 공급자 정보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는 MSDS의 작성 및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의 범위의 해석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제조자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Design Manufacturing, ODM) 방식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제품을 위탁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MSDS 작성, 제출 의무 등의 수행이 위탁제조자가 아닌 수탁제조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위탁제조 방식의 경우 수탁제조자에게 상세한 조성 정보 등은 공유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수탁제조자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위수탁제조관리 현황을 감안할 때, 수탁제조자로 하여금 MSDS 작성, 제출 등과 관련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의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영업비밀 공개와 관련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안법에서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위수탁제조와 관련하여는 별도의 '대리인' 제도 등의 제도가 없어 현실적으로 위탁자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면서 MSDS와 관련한 의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MSDS와 관련한 의무수행의 주체에 있어서도 타법의 해석을 준용하여 책임 있는 위탁제조자가 MSDS와 관련한 작성,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신청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MSDS의 공급자정보에도 기재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타법에서도 위탁제조와 관련한 제조자의 의무수행에 있어 제조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제조행위가 아닌 제조물(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타법사례 1)
  부가가치세법 통칙2-4-3 [위탁가공 ·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함.
- 타법사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대하여 '제2조5호 가목'에 따라 위탁자를 그 의무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MSDS작성·제출·영업비밀 신청: MSDS 번호연계

타 사업장으로부터 MSDS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MSDS를 연계하여 비공개 승인신청이나 MSDS 제출하는 기능이 소개되었으나 현재 구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자가 조성물의 MSDS 제출을 위해 전성분을 요구하나 해외제조업체가 영업기밀 이유로 전성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계 기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용 원료가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유해성 MSDS라서 해외제조업체는 MSDS비공개승인 및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자나 조성물 수입자들은 자사 제품의 MSDS 작성 또는 비공개 승인 신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제조업체에 전성분 공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성분은 영업비밀이므로 해외제조자(수출자)는 전성분 공개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 종료 시 곧 국내 수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자는 제대로 영업을 못하게 되어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건의사항

원료의 MSDS 제출 번호를 수입자 및 국내 제조자에 제공/연계하여 성분 제출을 대신하여 하위사용자가 MSDS 제출 가능토록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원료 수입자(선임자)가 MSDS제출시 전성분 없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제출하더라도 국내 제조자나 조성물 수입자에게 연계가 되어 비공개승인이나 MSDS 제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스템 상 번호 연계의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 원료의 전성분 제출 대신, 원료의 MSDS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및 제162조 7항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7. MSDS 제출 유예기간 적용 기준

2019년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및 혼합물 수입·제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일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아래와 같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그러나 원료 공급사의 수입량과 최종 사용자의 생산량이 상이한 경우 유예기간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예, 원료공급사는100kg 수입 하나 최종사용자가 1,000톤 이상 생산할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MSDS 개정을 요구하므로 수입사는 유예기간이 2026년에서 2022년으로 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적용 기준을 수입량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8. 소량 연구개발용 제품의 영업비밀 신청 제외
현재 소량의 연구개발용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영업비밀 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비공개 승인 신청은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심사 보완 요청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승인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시기 적절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용 제품에 있어 1-2kg을 수입하기 위하여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주의적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샘플의 경우 상업화도 되지 않은 샘플 100-200g를 위해 영업기밀인 전성분을 공개하려는 해외 업체는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 국내 업체의 신규 연구개발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사항
100kg 이하 샘플의 경우 승인이 아니라, MSDS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2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9. MSDS 비공개 심사: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류 인정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승인 심사 시 정확한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과학적 근거로 분류되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비공개승인대상 물질만 시험하기 불가능한 경우 과학적 근거 예측 자료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반응 후 분리 시험이 불가능한 혼합물의 경우 전체 제품을 시험한 후 아는 성분들의 분류자료를 토대로 각 물질의 분류 추정)

건의사항
MSDS 비공개 심사 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 대하여서는 인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제11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10. 살생물제품의 승인 중, 승인 취소에 따른 수입·판매 경과 조치 필요
현재 법 부칙 제3조 1항 2호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이었으나, 물질 승인 과정 중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또는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1년 이내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생물제품의 승인 과정 중, 과도한 자료 구입 비용, 효과 효능 불충분 등의 이유로 승인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과 조치가 없어, 승인신청을 취소하는 즉시 시장에 있는 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BPR의 경우, 제품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180일의 경과 조치 (phase-out) 기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인 살생물제품이 제품 승인 과정 중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1년 이내 가능하게 경과 조치를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11. 살생물제로도 관리되고 있는 살균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올해 7월에 개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세정제•살균제 관련 추가된 필수 사용상의 주의 사항으로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문구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손상은 죽음의 의미 또한 수반함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용도의 살균제로 세탁 세제이면서 항균을 표방하는 제품들은 빨래를 하다 피부에 닿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손상이 없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UN GHS 건강 ·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표시를 하고 있으며 GHS기준에 따라 '치명적인 손상'을 표시하는 생활화학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건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에UN GHS건강 ·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적인 손상에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당 필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화장품위원회

박안숙
이사,
화장품 위원회

주요이슈

1.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재생원료 사용, 생분해성 (PCR) 플라스틱 사용, 리필 용기 개발 등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가 쓰고 버린 후 이를 원료 형태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수지이자 폐기물을 높은 수준의 기능으로 재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서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는 동시에 화석 유래 버진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재활용 용이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 규정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 나라별 재활용 산업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정도가 달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포장재에는 한국 규정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임에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활용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PCR 플라스틱을 사용해 생산되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리필이 가능한 용기일 경우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의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적용 일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며 기존 제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 적용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는 유통기한

36개월 이상의 특수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일시에 적용받습니다.

포장의 표시변경은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재질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수입제품의 경우는 수출국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포장 및 표시 변경에 있어 국내 제조 제품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의사항
표시변경과 관련된 법규 개정에 맞춰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3.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된 법률이 개정 예정인 바 이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정책 관련 표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서로 다른 시행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2021년 3월 24일 시행),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2022년 1월 1일 시행), 자원재활용법 (윤미향 의원, 이수진 의원) 발의 포장공간 비율 표시 신설안,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2월 16일-3월 29일)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 비율 기준 신설안

개정되는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포장재 교체로 비용 증가 및 기존 표기 포장재의 폐기 등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개정들의 시행일 운영에 있어 통합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 변경 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를 도입하여 포장재 교체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고 기업에서는 원스톱으로 환경 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1항 및 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자의 경우, 포장재 수입통관 전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포장재 실물이 없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제조·수입 전이 아닌 출시 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5.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별표 1에서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리병 포장재의 경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가 있으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데 일부 제품 유형은 제품의 품질 유지, 위조품 방지 등의 이유로 재질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 제품에서 알코올의 휘발 방지 등에 사용되는 마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리병은 분리불가능 잡자재가 있어도 유리병을 파쇄한 후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 잡자재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유리병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에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의 경우 향수는 제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간이측정 방법 중 구체적인 판정 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 (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문의 시 시험 기관 간에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우려 및 실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시험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건의사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간이측정 방법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정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내 담당 인원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표준 지침을 마련 후 관련 시험 기관에 공유하는 등의 관리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7.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 그 구성품을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우치 등은 그 자체로 제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면서 동시에 완충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재사용 하는 하나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른 구성품을 넣을 경우 포장공간 및 포장횟수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고정된 모양이 없어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포장공간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그 자체로 제품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그 안에 다른 구성품을 넣는다고 해도 포장이 아닌 구성품으로 보아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측정 대상에 제외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8.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현재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 (수입제품 · 포장재만 해당한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EU국가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EU Regulation 1223/2009 제19조에 의거하여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 표시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법령에 의거한 필수 표기사항으로서 등급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의거하여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기준」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기본 원칙 다항인 '해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이 부착된 외국어 표기 라벨'을 추가 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기준」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9.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수입화장품의 경우 정부가 국외에 있는 제조사로부터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 국내 제조자에 갈음하는 관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 시 해외 제조국, 제조사, 제조 판매 증명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국내 판매 유통 기록, 품질검사 등 수입한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한글 라벨에 국외 제조사명과 주소를 외국어의 한글 발음 표기로 표시해야 하나 각국의 언어 발음을 한글로 표시한 것이기에 소비자에게 실질적 정보 제공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제조사 및 품질관리 등의 소비자 안내가 필요할 경우 수입자인 책임판매업자가 제공 가능합니다. 국외에서도 화장품 포장에는 제조사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화장품의 경우 진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판매업자 표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 제품들 역시 제조원 표기가 OEM 독과점 및 유사제품, 복제 제품 등의 이슈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율 표기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아도 쉽게 제조원 정보가 확인 가능한 바, 화장품의 제조사 표시에 있어 업체 자율 표시제도 도입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패션및유통위원회

나은성
과장,
패션 및 유통 위원회

주요이슈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특정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을 추적하여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 연월, 수입 연월, 최초판매 시즌, 로트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속서별 표시사항이 달라 정보 표시 및 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QR 코드의 사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이는 가정용 섬유제품 외 다른 제품군에서는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각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원활한 제품추적을 위한 표시사항을 제조 연월, 수입 연월, 로트번호, 최초판매 시즌 등 최대한 다양하게 허용하고, QR 코드를 가정용 섬유제품 외 다른 제품군의 표시 방법 중 하나로도 인정하여 제품정보가 효율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3항에 따르면, 가격의 표시는 1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및 진열 방식, 점포 형태, 고객 응대 방식, 브랜드 전략 등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15 포인트 이상의 가격 표시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와 같은 귀금속의 경우 크기가 작은 제품 여러 개를 동시에 진열하기 때문에 15포인트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고객을 1:1로 응대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제품 정보에 대한 고객 질문에 바로 대답이 가능하므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매장 진열 디자인이나 색상에 따라 15포인트 미만의 글자 크기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가격의 표시를 일괄 15포인트 이상으로 정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점포에서 각자 사정에 맞게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및 분리배출 표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로 인해 제조 및 수입업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경우 출고 전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 구조 증명서 또는 재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한데 수입된 상품들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질 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재질 검사 증명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나, 평가 의뢰자에 비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기관이 부족하고 동일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관마다 시험 항목, 수수료, 소요 기간이 상이합니다.

건의사항

공인시험기관의 질적 및 양적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배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국내에서 규정하는 분리배출 표시 외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표시 방법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시계 및 귀금속 제품의 포장재는 포장재의 역할뿐 아니라 보관 용기의 기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의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며 보관 용기의 기능을 하는 포장재의 경우 표시면제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 기준

유아용 섬유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일일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아섬유제품은 견본 제품 통관 후에도 동일 모델 요건 확인신청을 위해 재질 및 색상에 따라 별도의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관 단계에서 제품별 색상별 사진, 성적서, 인증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여 테스트 인증서 발급 시험기관으로부터 통관 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관세청의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해 동일 제품 수입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은 통관을 지연시킵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개정되어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에 대한 인증기준이 명확화되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 및 절차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 기준과 관련하여, 의류 및 패션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류의 패턴이나 프린트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색상을 수량화하여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시험기관과 검토자의 주관적인 색상 검토 및 판단에 따라 제품의 승인 또는 반려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확인 시험 및 검사기관은 국내 8개 기관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 이미 자체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제품들도 국내 기관에서 추가적인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 규정과 안전기준이 조화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로부터 제품 수입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한국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건의사항

현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준수율이 높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건의합니다.

또한, 패션 및 의류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이 모호한 '색상 및 제품의 구분'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불필요한 중복적인 안전 확인 테스트를 거치지 않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안전확인 시험 및 검사기관에 해외 기관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수입 식품용기의 안전성 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된 식품용기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에 의해 안전과 품질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재질 및 HS코드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견본 제품의 필요 수량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업이 적절한 수량을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 담당 검사관이 현장에서 과다한 수량의 샘플을 요청하게 될 경우 다품종 소량으로 입고되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이를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제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명기된 해외시험 인증기관에서 안정성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단계에서 검사성적서 또는 증명서 제출 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실제 제품과 매칭이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상 해외 검사 성적서를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나아가 기존에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시 무작위로 샘플 검사를 받게 되는데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품 수는 보통 5개 미만이지만 해당 무작위 검사에 필요한 샘플 검체의 수는 평균 5개 이상, 예외적인 경우 70개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샘플 검체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부적합업체로 지정되어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다품종 소량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관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경우 제품 종류가 많아 정밀 건을 포함하여 다량의 시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청에서 하루에 처리가능한 정밀 건수는 한 화주 당 15건 미만으로, 여러 종류의 제품이 수입되는 하나의 수입 건수를 처리하는데 평균 한달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건의사항

수입제품의 재질, HS Code, 시험 별로 견본 요청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며 규정에 명기된 해외 인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및 인증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수입 신고 시 검체량 부족으로 3회 이상 반려될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데,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적합업체로 지정하기 보다 검체 수가 부족한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관의 인원 충원 및 내부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정밀건수를 포함하여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정밀검사 신청 건수를 증량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등록 및 승인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안전기준 고시 포함여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해당 제품의 효과 및 효능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 및 수입업자가 제품등록절차 중 제품의 성분물질 및 용도에 대한 자료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이트에 등록하면 시스템 상 배정된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을 내리게 되는데, 담당자 별로 제품의 물질등록 구분, 등록 항목 등 등록방법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매번 관련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재차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등록처리기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제품의 승인이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등 업무의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하루에 처리 및 검토가 가능한 건수는 10건 미만으로 제한되며, 제품의 검토 및 승인은 각 건수의 신청 순서가 아닌 담당자 배정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 별로 검토기간, 수정 요청 사항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순서와 별개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 진행을 위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물질 등록 및 승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승인 담당자의 인원 충원 및 내부 승인 절차의 보완을 통해 일일 검토 및 승인 건수를 증량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식품위원회

서효경
이사,
식품위원회

주요이슈

1.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천연 표시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차목에 따라 합성향료, 착색료,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품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 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수·축산물, 식수, 유전자변형식품, 나노식품 등에 "천연"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세척, 박피, 분쇄, 교반, 냉동, 냉장, 건조 (60°C 이상 제외), 성형, 압출, 여과, 원심분리, 혼합, 폭기, 숙성, 자연발효, 용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CODEX, EFSA, US FDA 등에서는 식품의 '천연'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단어의 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위원회 (ISO)에서 발행한 '식재료가 천연으로 인정되기 위한 정의와 기준' 에서는 천연으로 보는 가공의 범위에 물리적, 효소적, 미생물학적 가공 공정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 공정이더라도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적용한 경우 천연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적 측면에서도 통상적으로 열처리 공정은 물리적 공정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건의사항

현재 대한민국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천연" 표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을 위한 열처리가 필수적인 가공식품에는 천연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폭넓게 "천연" 표시 범위를 인정하여 살균, 멸균 등 가열 (60°C 이상 포함) 공정을 거친 제품도 "천연" 표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가열 살균공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천연의 기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범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게 보다 가혹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3]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국내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의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인 반면,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1차 위반 시 최대 품목 제조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수입식품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되어 위반 사항과 관련 없는 모든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 훼손, 고용조건 악화 등 도저히 동일한 수준의 제재로 평가될 수 없는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역시 국내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의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인 반면,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2항 관련 행정처분 기준 비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3]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하.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위반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11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하.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1차 위반 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

식품 등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관련 행정처분 기준 비교			
식품제조가공업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Ⅱ.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Ⅰ.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중략)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1차 위반반 영업정지 5일

건의사항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에게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3.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표시 개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7호에 따라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품목을 나눠 관리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천연향료물질과 합성향료물질을 '향료' 하나의 품목 안에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감미료, 색소 등에 천연 및 합성의 구분을 없애는 것과 같이 향료의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위의 개정안 시행 전 국내 규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공전상에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품목 구분해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향료의 정의 및 규격에 따른 천연 표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출국과 표기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로, 같은 제품이지만 수출국에서는 천연향료로 표기되고 국내 규정상 합성향료로 표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며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상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7'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국내 및 수입 식품의 향료 표기를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의 구분없이 품목명인 "향료"로 표기하기를 건의합니다.

다만, 기존 국내 규정상 천연의 정의 및 규격에 부합하여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는 그대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글표시사항에는 국내 규정에 따라 "향료"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4. Non-GMO 표시 기준 완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2021-035호에 따라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불인정 기준을 0.9%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시행 전 한국에서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GMO 사용승인 6종)를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것, 2)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GMO 사용승인 6종)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 순위로 사용된 경우, 3)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음 (개정 예정).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기에 가공식품의 경우 라벨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건의사항

Non-GMO 표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식품 관련 산업 발전 도모 및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선 방향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표시기준 개선을 건의합니다.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가 원재료로 사용되었다면 원재료의 함량이나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비의도적 혼입 기준치 이하의 제품에 Non-GMO 표기가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헬스케어 위원회

박안숙
이사,
헬스케어 위원회

주요이슈

1.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급여등재 및 약가 관리 제도 개선

한국은 신약 가치평가에 있어 경제성평가 의존도가 높고, 낮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값, 효용(utility) 저평가 등으로 타 국가 대비 신약 가치가 크게 절하되는 경향이 있어 신약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 등재시에도 1년차 예상청구액을 기준으로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 총액제한(cap)이 이루어지는 등, 등재 직후 1-3년간 약가인하 기전이 강력해 신약 국내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혁신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는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평가의 한계로 인한 보험등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면제범위 확대를 합리적인 선에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고가약 병용투여 시)

또한, ICER 임계값을 경제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필수 희귀질환 치료제는 영국의 HST 사례를 참조하여 1.4억 이상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입 이후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현행 경제성평가 지침, 할인율, EQ-5D tariff 등의 현실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도 급여가 어려우나 의료상 요구도가 높은 약제에 대해 한시적 재난적 의료비 기금 지원을 확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상청구액이나 총액제한 기준을 신약 등재 4년차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신약 약가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위험분담제 재재평가제도의 형평성 개선 및 국제적 조화 필요

2014년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2021.3.1 기준 위험분담제 환급 약제는 44 품목 (9개 품목은 계약종료 제외)이며, 7 품목은 위험분담제 재평가가 완료되고 다시 재평가(재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 등재신약과의 형평성: 위험분담제 환급제로 재평가가 완료된 등재신약은 이미 최소 두 번 이상의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신약으로 재재평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위험분담제 재평가가 완료된 약제는 급여기준확대 평가 및 협상,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실거래가제도, 제네릭등재시 약가인하 등 여러 사후관리 기전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기에, 다시 재평가(재재평가) 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로 보여집니다.

신약가치 지속하락: 경제성평가등재 신약은 일반등재신약보다 약가인하율이 높고 (-10% vs.-6%), 위험분담제 재평가가 완료된 환급약제들은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신약이며, 재평가 및 급여기준확대시 평가 및 공단협상까지 진행되어 약가인하율이 더욱 높아, 신약가치인정 측면에도 반합니다.

'코리아 패싱' 위험이 심각한 지금, 비교대상 약제의 약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제네릭이 등재된 약가와 비교하여 위험분담제를 재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네릭 등재 시까지 환급계약을 자동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재평가가 완료된 환급약제는 재재평가 없이 제네릭 등재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위험분담제로부터 환급제로 별도 분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재재평가 별도) / 재건의 (위험분담제도)

---

3. 공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내 R&D 발전에 공헌한 업체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세금, R&D 관련 투자, 약가 혜택 등을 부여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기준은 국내제약사에 유리한 항목이 많아 불공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년 12 월 기준으로 48 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오직 3 개의 기업만이 다국적 제약 기업입니다.

주요 불공정 요소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수출, 기술이전/외국기업과의 협업만이 다국적기업의 활동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본사가 위탁임상시험기관(CRO)을 통해 직접 지불한 국내 R&D 비용은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신약개발은 CRO와의 협업 및 글로벌 개발이 글로벌 추세인 만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R&D비용에 국내에서 집행된 CRO를 통한 글로벌 임상 비용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국내 다국적 기업의 R&D 비용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국내 협업 랩 투자 및 활동, 협업/파트너링 활동 노력 등도 인증기준에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R&D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외국계 기업의 국내 R&D 발전을 위한 열린 혁신 등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에게 기대할 수 있는 국내 R&D 공헌 활동들을 포함하도록 외국계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별도로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보건산업진흥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4. 혁신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 고려
희귀유전질환 및 희귀암에 있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여 단 한 번의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혁신적 치료제 도입을 위해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이후 식약처에서 신속 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에도 속속 해당 치료제들이 시판 허가를 받고 있으나, 현실적인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향후 도입될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국내 도입 및 환자 접근성 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사항
첨단재생바이오법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본 법령 하에서 허가된 대체 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및 암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신속한 진료 접근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및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 보험 급여 기간 단축: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 개선 혹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후 약가 협상 전 예비 급여 등재 등 신속등재 제도 도입 등 획기적 단축
- 현행 보험 급여 제도 개선: 위험분담제의 다양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개선 및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등재율 획기적 개선
- 별도의 트랙 혹은 기금 마련: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등의 별도 재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

관련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희귀 난치암환자 약제 접근성 강화

희귀암환자들은 호발암환자보다 5년 생존률이 낮고, 표준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암 환자들 또한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로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4차 암관리종합계획에서는 희귀 및 난치암 환자의 생존률 격차를 줄이겠다는 선언과 함께 연간 성과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소수의 여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 환자들을 위한 허가 후 신속한 급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제의 임상적인 효과가 검토된 경우, 약가 협상 전 예비급여의 형태 등으로 신속한 약제 접근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post-ATU' 제도 혹은 신속 약가 결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암 기금 마련 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를 희귀 및 난치암 환자에게 확대하여 신속한 접근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합니다. 영국의 항암제기금(CDF), 호주와 같은 별도의 기금 제도,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4차 암관리종합계획)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4차 암관리종합계획 / 암관리법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6.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보건의료정책결정은 신약 접근성, 보험정책 및 규제 등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증거 기반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의 회의록 및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에 대한 각 위원회들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간의 검토 과정이 중복적이고 반복적이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각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평가서를 제출한 제약사에게 만이라도 회의록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 예측 가능성

및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협의하고 중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사평가원의 각 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각의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검토는 최소화해야 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7. 백신 포함 생물학적 제제의 중복적인 GMP평가 및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한 EU-한국 간 상호인정협정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2023년도 정책연구를 수반한 EU와의 GMP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면제협정을 추진하겠다던 입장(2019년)과 달리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불가입장(2020년)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의약품 상호실사협력기구(PIC/S) 회원국으로써 높은 수준의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과 다양한 부분에 걸쳐 수십년 전부터 상호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바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상호인정협정의 확대는 필수불가결의 변화일 것입니다.

건의사항

EU와 한국 모두가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생산위탁(Fill & Finish 포함)이 수행되고 있는 품목에 한하여 GMP평가 및 중복적 품질관리시험을 생략하는 사업 진행을 제안합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된 바와 같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입시 해외제조소 등의 품질검사 결과 등 확인을 통해 수입사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긴급성이 있는 백신의 경우 국내 위탁생산자가 있는 경우 원료의약품생산자의 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해주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바 그 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복된 시험을 줄여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가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필요성에도 부합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질관리자료 제출로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일례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제조 및 유통과정의 온도관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내 수입 후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8. 투명한 데이터 공유 요청 -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 자료

한국은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국가조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접종데이터가 잘 축적된 국가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연구영역 분야와 산업계에 있어 백신의 효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요예측, 새로운 혁신적 백신 도입 시 갭 분석 등 여러가지 분석방법을 통하여 엄청난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산업계의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정책 및 백신 공급계획 수립 시 공중보건에 많은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데이터 공유는 관련산업계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d와 Tdap은 공급되는 백신과 무관하게 Td/Tdap 통합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공중보건을 위해서 업계가 올바른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합니다.

건의사항

백신과 관련된 제조사와 공급자에게 백신접종 기록과 관련 더 많은 자료가 투명하게 공유되기를 질병관리청에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공되어지고 있는 형태와 같이 분기별이 아닌 월별자료 등 보다 빈도 높은 국가예방접종 데이터 공유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자료접근권한의 확장을 요청 드립니다. 처방의약품의 HIRA를 통한 데이터 공유 사례와 같이 제약사가 자료 요청 시 지역별, 나이별, 브랜드별 그리고 접종처(병원/의원)별 등과 같은 개개의 가공 전 데이터를 제공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절차의 표준화

백신 제조/수입업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의사 결정 시 제약업계가 공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신규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논의는 다양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신 제조/수입업체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절차의 부재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라는 면에서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혁신적인 백신을 공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절차에서도, 사전에 정의된 규정이 없어 검토 및 의사결정의 소요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아울러 심의 절차에 있어 백신 제조/수입업체의 참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백신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백신 및 예방접종 정책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새로운 백신 도입을 신청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백신 허가 시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여부 검토 절차가 제조/수입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시 각 단계별 검토 절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를 사전에 규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국가필수예방접종 검토 및 심의 절차를 백신 제조/수입업체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백신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절차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공중보건 혁신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위한 백신의 가치 인정

백신은 공중 보건에 필수적이며, 백신의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백신들이 꼭 필요합니다. 백신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가치가 백신 가격에 반영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백신의 혁신적 가치 및 백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 성과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낮은 가격 기준으로 백신 가격이 책정되는 현실입니다.

효과 개선이 있을 경우 가격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간단한 가격 결정 지침이 질병관리청 내에 있으나, 그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진 백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혜택 등 백신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는 방법론도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건의사항
현재의 간략한 가격 결정 지침을 효능, 안전성, 편의성, 기술적 혁신 및 광범위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가치 등의 측면에서 백신의 진정한 가치를 포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책으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연한 백신 가격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11. 예방접종비 제도 개선
다가 혼합 백신은 피접종자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감염병을 함께 예방함과 동시에 접종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줄여 주고, 접종률 향상 및 적시 접종에 기여하며, 아울러 피접종자와 보호자가 전반적으로 더 나은 접종 경험을 갖게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큽니다. 이에 다가 혼합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가 혼합 백신에 대한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접종비 상환 제도에 따르면 다가 백신을 각기 별도로 접종하는 경우 상환되는 예방접종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접종자로 하여금 다가 혼합 백신 접종에의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접종 시행 의료인들로 하여금 다가 혼합 백신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아래 3가지 측면에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표준 준수
2) 피접종자와 그 보호자에게 최선의 예방접종 경험을 제공하고 접종 횟수 및 방문 횟수 감소에 기인한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의 비용 절감 도모
3) 가장 발전된 예방접종 옵션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산업계가 연구 개발을 지속하게 하는 것

건의사항
접종자들로 하여금 다가 혼합 백신 접종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교통 비용이나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절감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다가 혼합 백신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접종비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접종자들에 대한 시행 수가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접종자가 혁신적인 제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 수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12. 백신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
국가출하승인의약품중 백신의 검정항목 선정을 위한 위해도 평가기준 중 하나로 국내 국가출하승인 배치수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국내 수입품과 동일 규격, 동일 제품인 경우 해외에서 출하한 실적도 함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국내 수입품과 동일 규격, 동일 제품의 경우 국내 국가출하승인 배치수에 더하여 해당 제조원 또는 해당 국가에서 출하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13. 동물유래 시약의 동물검역절차 간소화
의약품 출하를 위한 QC 시험은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백신 등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시약이나 표준품은 많은 수의 동물유래 시약이 필요합니다.

동물유래 시약은 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검역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원본 등이 요구되어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전에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통관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시약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수적인 동물유래 시약 및 표준품의 통관절차의 간소화/개선을 건의합니다. 동물검역의 어려움은 수입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바이오 의약품을 취급하는 국내 제조사에도 해당합니다.

의약품 QC 시험을 위한 시약이나 표준품의 사용은 매우 명확하고, 이들의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감염병 예방 및 이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매우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절차와 같이 동물검역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초수입에서 검역을 통과하면, 후속 수입에서는 검역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의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1-41 조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31-37 조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관련부처 농림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14. 필러 관련 사용 전후 사진 사용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면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러 제품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4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의료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 HCP)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그 효과와 효능을 확인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의사항
필러 (Injectables)와 관련하여 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경우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에 사용 전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보험위원회

김시윤
과장,
보험 위원회

주요이슈

1.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 조에 따른 수리비 공표 제도가 2020년 4 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15조의 2가 2020 년 10 월 8 일 신설되어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리 비용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리비 공표 제도가 폐지돼 정비소와의 계약에 근거해 수리비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수리비를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정비 업계가 비정부기구인 자동차보험 정비협의회에 논의할 항목을 서로 제안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협의회의 안건 및 논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파악 및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건의사항
국토교통부는 법규 개정에 따라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되면 동 협의회에서 수입차에 대한 정비요금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반면, 현재 증가하는 수입차 추세에 따라 적절한 수리, 정비 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으로 협의회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를 재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약물 · 마약 등의 상태로 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약관 적용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는 운전자가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마약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금 구상 또는 사고 부담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로부터의 구상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상해 발생 시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43 조 및 제44 조에 규정된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의 보상이 제한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통상해보다 발생 위험이 높고, 관련 법령에서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으로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히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됩니다.

건의사항
최근 마약과 마약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전자보험 면책이 필요합니다. 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보험 약관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운전자보험 약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의 제출 및 발급 의무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내 사생활에 근접한 질병정보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이하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제출이 목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 주체가 회사의 요청에 동의하더라도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지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피보험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고지의무 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정한 보험료 등의 산정과 보험 사기의 방지를 위해 명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위 법 제35 조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 개정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나은성
과장,
지식재산권 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주요이슈

1.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8년 말에 발간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특히 GDP, 고용, 임금, R&D 투자 및 광고 지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본 연구가 유용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1]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타당한 분석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발달한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량적 평가는 2018년 연구에 이어 유용한 후속 연구가 될 것입니다. 유럽 지식재산청은 2021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홍보 및 배급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18년 연구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발달한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부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ECCK는 한국이 지식재산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특허 및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에도 확대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한국의 낮은 형사처벌 수위는 여전히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저작권법' 침해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침해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1. European Commission. (2021).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R in third countries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처벌 수위는 범죄를 적절하게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계적 결함'[2]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위조 제품의 생성, 배포 및 판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경우 "보상이 가장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벌금 및 제재가 주요 억제 수단"[3] 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위조범죄가 실제 징역형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건의사항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기관 및 사법 기관 공무원들이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조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이해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관련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 대법원 (양형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관세청 및 일선 세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유통환경 속에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일단 시장에 유입된 이후에 단속을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ECCK는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에서도 관세청 및 일선 세관들이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계속하여 온 것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조 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5] 한국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등의 물품들도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일선 세관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현 수준의 검수율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함양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uropean Commission. (2021).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R in third countries

3.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4. 강준하. (2018).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제통상연구, 23(4), 97-125.

5. OECD and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1). Global Trade in Fakes

건의사항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교역량의 추세에 맞추어,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수율을 높이고 관련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ECCK가 주최하는 지식재산 역량 개발 세미나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부서 이동 및 인수인계 시에 축적된 지식이 잘 보전되어 전달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4. 재판매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지식재산 권리자들은 제품의 병행 수입 및 판매업자, 중고품 판매업자를 비롯한 일부 재판매업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최근 관찰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악명 높은 병행 수입업자들은 한 포장상자 안에 진정상품과 위조상품을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수입된 한 상자 안의 제품이 진정상품인지 아닌지를 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판매하는 일부 재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의 등록된 상표 및 로고, 광고 또는 디지털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재판매업자와 브랜드 간에 파트너십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거나 판매업자와 브랜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건의사항
병행수입 물품이 일반 수입품보다 더 쉽게 통관되는 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수입 제품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수입업체의 세금 납부, 문서 위변·조 및 사기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와 같은 일부 조치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상업적 성격의 재판매업자들이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관세청이 2015 년부터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현황 및 주요 적발 사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ECCK는 이러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통관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 현황을 기재하는 데 있어 전체 적발 규모뿐 아니라 권리 유형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적출 국별, 운송 형태별 적발 규모를 개수가 아니라 중량(단위: kg)으로 표기하고 있어 적발의 정확한 규모와 증감을 알기 어렵습니다. 압수량이 중량으로 표기될 경우, 해마다 달라지는 압수물품의 특징에 따라 변동이 커서 적발 규모와 증감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일본의 세관 보고서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세관 통계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압수량을 개수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보고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세계 주요국들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적발 규모 표기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압수량을 개수로 표기하면 적발 물품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 규모와 그 증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6.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2018년 국제 우편물 통관 규정 제8 조의 2가 개정되어 위조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않고 압수·보관할 수 있게 되자, 관세청과 기업은 EMS (Express Mail Service)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신속한 소포 분류, 현장 감정, 소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다 많은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MS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우체국 소포뿐만 아니라 항구 및 민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포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EMS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프로젝트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제 우편물의 방대한 양에 비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어 국제 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위조품의 검수율을 높이기 힘들며 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압수된 우편물을 보관할

창고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위조품 적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EMS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 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EMS 프로젝트를 통해 압수된 소포의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 추가 할당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7.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ECCK는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서울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상품 판매를 상당 부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ECCK가 서울시와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성과에 기여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CCK는 현재 공공연하게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제 시장과 대구광역시 서문 시장에서도 서울특별시 지자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연한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계도하고 보다 빈번히 단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ECCK는 역량개발 세미나 등을 통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건의사항

부산중구청과 대구중구청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에 의거하여 위조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제품을 압수하기 위해 근무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제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관련부처 부산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대구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8. 유사상품에 대한 단속

위조품 업자들은 위조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조품의 압수 및 폐기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저명한 브랜드 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위조품 업자들은 진정 상품과 같은 모양이지만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미완성 제품을 상점에 진열하고 제품 판매 후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의 일부를 제거하면 상표가 드러나는 방식의 위조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법 침해로 간주되지만 단속활동은 주로 동일상표를 사용한 물품 압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단속 활동을 동일상표로만 제한하는 것은 위조 산업에게 유사상표 사용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단속 공무원들이 앞서 언급한 위조품 업자들의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상표를 사용한 물품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중국 및 프랑스에서의 해외 사례는 단속 공무원들이 참고하기 유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ECCK와 회원사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효과적인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대구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위조 산업 또한 이 같은 언택트(Untact) 추세를 따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되었고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불법 위조품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또는 온라인 플랫폼)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비자 및 판매자 등 여러 시장 참여자들을 매개하는 거래 모델의 특성상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위조품 판매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자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 플랫폼마다 조치의 정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2017년 온라인 시장의 역할 증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터넷 시장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본 법률 만으로는 온라인상에서의 위조품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ECCK는 2019년 백서에 대한 특허청의 답변과 작년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 대책에도 언급되었듯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위조상품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나아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진행한 바 있는 상표권자, 마켓 플레이스 및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 간의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을 이끌어 내고 이에 따라 상표법 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다음 세 가지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매개자들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기본 조치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둘째, 효율적이고 신속한 게시 중단 절차를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위조품 판매자의 ID와 계정을 삭제합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0.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온라인상 위조품 거래 방지를 위해 2011년 유럽연합에서 처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상표권자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어서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2021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6]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과 상표권자 간의 양해각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그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또한 양해각서는 디자인 침해, 사기적 행위 및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서명자 간 질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위기가 위조상품 판매 및 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표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일상 업무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는 동일 등록 정보로 타 플랫폼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특정 플랫폼에서 위조품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권자는

6. European Commission. (2020).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ale of Counterfeit Goods on the internet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타 플랫폼과 공유하여 다른 플랫폼에서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정품인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판매활동 중지 및 판매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효과적/효율적 탐지 및 차단 조치가 가능하며, 불가피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품을 줄이기 위한 양해 각서가 특허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간 체결되었지만, 상표권자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표권자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건의사항

ECCK는 특허청이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도모하고 온라인 상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ECCK는 보다 효과적인 위조상품유통 방지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자, 협의회) 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며, 이것이 온라인 위조품 유통 공동 대응 2.0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관련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11. 표준필수특허

오늘날의 유비쿼터스 연결 시대에 국제 표준은 핵심입니다. 연결성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 기업들의 집중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 표준화된 국제적인 통신 기술이 탄생되었고, 이를 통해 종단(end-to-end) 시스템 실현과 전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었습니다.

셀룰러 기술의 중요성은 빠른 확산 및 사용으로 한국에서 이미 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5G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5G는 향후 10년동안 자동차, 건강, 에너지, 농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업계의 니즈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물 인터넷(IoT)에 필수적인 자동화 및 데이터 교환을 지원할 것이며, 교통, 공공 안전 및 방위와 같은 사회적 기능에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5G와 IoT가 제공하는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구현하려면 이동 통신 기술의

표준이 전세계 기업들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과 경쟁이 가능한 프레임 워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새로운 통신 기술 표준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적이고 개방적이며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주된 요소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권리를 부여해 주어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개방형 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육성되고 건전하고 개방적인 기술 생태계가 뒷받침될 것이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최신 기술의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정부 당국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표준필수특허 관련 소송을 다루는 국제 법원에서 인정받은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둘째, FRAND 분쟁은 독점 이슈가 아닌 계약측면의 이슈입니다. 셋째, 디바이스 레벨의 라이센싱은 적절하며 산업계의 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로열티는 장착된 제품의 최종 사용에서의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련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서효경
이사,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주방및소형가전위원회

주요이슈

1.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전자문서화 및 인증데이터 검색 개선

'KC인증서'는 현재3사시험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으며, 이렇게 발급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는 Safety KOREA, UNI-PASS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실물 인증서를 별도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인증서의 갱신 및 취소, 반납 등의 해당 인증서 업무를 진행할 때만 원본을 사용합니다. 안전인증서를 갱신할 경우, 시험소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배송이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자 문서화 전환 시 시험소는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업체는 별도로 실물 인증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서관리에 효율성이 더해지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Safety Korea 웹사이트에서 제조업자/수입자가 보유한 3사 시험소의 인증 데이터의 일부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엑셀 추출이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정격, 공장 주소 등은 3사 시험소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의 인증서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인증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인증서의 전자 문서화를 건의합니다.

Safety Korea 웹사이트에 이미 공유되어 있는 인증 데이터 정보를 더 확장하여 별도 시험소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인증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엑셀로 추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개정되는 규제 및 법안의 적용시기 정례화

최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계속해서 재개정 예고되고 국회의원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와 법률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이를 따라가는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 표시사항의 경우, 수입제품은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고량 및 판매량을 예측하여 수출국에서 제작하고 선적하기 때문에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규제나 법안의 최종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일정만이 정해져 있어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로, 분리배출 표시 제도의 경우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 제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지만, 신제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최종고시가 발표되어 신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의 경우 준비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개정되는 규제나 법안의 적용시기가 정례화되기를 환경부에 건의합니다. 표시사항 변경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년에 한 번씩 변경 사항을 모아서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물류및운송위원회

정누리
과장,
물류 및 운송
위원회

주요이슈

1. 직접운송 일반 요건의 현대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는 본 협정에 "규정된 특혜 대우는 …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이 효율적인 상품 유통을 위해 현지 거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본 조항에 따르면 상품의 후속 재포장 또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현지 거점 경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FTA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한-EU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

적절한 여건에 따라 재포장 및 재분배가 허가될 수 있도록 한-EU FTA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2. 환승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상품은 유럽에서 한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와 같은 비EU국가의 허브 공항과 같이 중계 거점의 역할을 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 또는 열차를 통해 유럽에서 아시아 항구로 운반된 후,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가 종착지인 한국행 선박에 재선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위 사례를 간접 발송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세청의 통보를 받고 한-EU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운송 경로 및 그 운영 방식은 운송 방식(직·간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 역시 발송인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따라서 관세청 자체적으로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공통의 절차를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조선및해양위원회

정누리
과장,
조선 및 해양 위원회

주요이슈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한국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 입찰 시 생산 원가보다 금액을 더 낮춰 입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이로 인해 제품 품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현상 유지, 연구 개발 투자 감소, 기술의 혁신 동력 저해 등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건의사항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조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가격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안전성, 기술, 품질 및 사업 경험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려가 이뤄질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2.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획

현대중공업 홀딩스와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 건에 대해 유럽 해운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업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주요 고객들이며, 전 세계 화물선 수요의 30%를 차지합니다. 현대중공업 홀딩스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2021년 7월 현재 승인절차가 남은 EU, 한국, 일본의 승인을 받으면 대우조선해양은 아래 시장의 주요 경쟁사에서 제외됩니다: (1) 대형컨테이너선, (2) 유조선, (3)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4)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

또한, 이 두회사의 현재 세계 전체 조선시장 점유율은 21%인데,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이 보다 훨씬 높은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 조선사들이 합병사에 대해 경쟁사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는 노하우 및 실적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주요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기술의 습득여부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산업입니다. 즉, 이들을 견제할 경쟁자가 새로이 나타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현대중공업 홀딩스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선박의 수주 가격 인상, 선택지 감소,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를 저해 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공정한 거래를 독려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회사 합병 검토 시 LNG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합병 결정을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3. 주52시간 근무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마다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제도 적용으로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생기며 해양 산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 법안이 몇 차례 유연하게 개정된 것은 맞으나, 24시간 비상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해양 산업계는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긴박한 선박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의 추가 근무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19 시국에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건의사항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독려하기위해 다양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해양산업을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업종(농림, 축산, 양잠 및 수산 사업 등)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성수기 추가 근무 후 대체 휴가가 제공되는 유연근무제가 최장 6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적용되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4.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해양산업 연구개발비 지원 및 프로그램 접근의 불공정성
연구개발은 해양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선박은 변동성이 크고 까다로운 해상 환경에서 운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선주는 안전성, 비용 효율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자산을 건설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한 코로나19 복구 사업이 발표된 이후로, 해양산업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개발 자금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회는 오직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 과정의 첫 단계부터 배제됩니다. 이들이 요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후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정하고 평등한 사업환경을 보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건의사항
공정하고 평등한 사업 환경 및 투명한 경쟁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창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 포털에 나열되어 있는 산업 부문에 따라 이전과 추후의 연구개발 시범 프로젝트의 목록 작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린 뉴딜' 실행 계획 아래 추진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추후 협력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장벽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해양수산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5. 코로나 19 대응책
항만 혼잡, 선원 교체 위기, 크루즈 라인, 법적 분쟁, 조선 수주 및 보수 등 해운업에 수많은 혼란을 야기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까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운업이 '기간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해당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산업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은 싱가포르의 경우, 해운을 기간 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다른 해양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운업계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이를 기간 산업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인력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논의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코로나19 및 기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해양 관련 산업의 운영 위험요인을 줄이고 사업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국외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권고하며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자도 해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운 산업을 '기간 산업'에 포함하고, 관련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해 주실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승무원 및 엔지니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 및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적법한 시스템 및 인증서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임창훈
부장,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주요이슈

1. 절충교역 이행 기간 연장

2018년 이후 새로 개정된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합의각서' 제13조-라 항목에 따르면, 계약된 사업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사업 이행 기간 연장에는 1일 기준 0.15%, 연간 최대 54.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책임 부담은 1일 기준 0.075%, 연간 최대 27.38% 부과 대상인 국내 공급 업체들의 의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처음 1년은 나머지 절충교역 가치의 20% 증가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 증가하는 이전 지침에 비해, 법적 책임의 상당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안이며 약 4개월까지는 국외 업체에 보다 유리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4개월까지만 연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므로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이행 의무자가 받게 되는 부담 증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연장되는 기간에 있어서도 방위사업청과의 행정처리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벌금 부과는 사전에 이행 의무자와 연장의 사유에 대해 논의한 후에 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연장의 사유가 이행 의무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절충교역지침, [별표 제2호] 절충교역 합의각서, 제13조-라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2. 절충교역 이행 보증

'절충교역 합의각서' 제14조에 따르면 해외 계약자가 합의각서에 합의된 이행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이 미이행가치의 10%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들의 채무 이행 의무 면제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계약자에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정 지침은 해외 계약자가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절충교역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개정 지침은 이행 기간 연장 기간 동안 추가 벌금을 요구하는 다른 조항들에 더해져 이전 지침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성향의 패널티 구조를 보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의무 불이행 시 이행보증금을 몰수한 후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의무가 차후 사업에 전가되어 사실상 당해 사업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잔여가치가 증액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 지침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체가 차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후 사업의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개정 지침이 상한액이 없이 벌금이 증가하여 이행 의무자가 무제한적인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이행 의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지침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절충교역지침, [별표 제2호] 절충교역 합의각서, 제14조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에너지환경

김태양
과장,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주요이슈

1.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 업체 간 원재료용 천연가스 직접계약

산업용 가스 업체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H2/CO를 생산하고, H2/CO를 중간으로 사용하여 최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에게 H2 및/또는 CO를 공급합니다. 고객의 최종 제품(TDI/MDI/PC)은 주로 해외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3항에 따르면 도매업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 대규모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2호에 따르면 가. 발전용, 나. 열병합용, 다. 수용용 수소제조용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천연가스를 원료용으로(연료용은 기존도시가스사용) 사용하여 수소 등을 제조하는 산업용가스 업체'도 포함시켜 도매업자로부터 (한국가스공사)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해외 시장에서 고객 경쟁력 제고 및 수송용수소까지 그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수소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용과 연료용의 사용 비율은 통상 80 대 20 입니다.

건의사항
현재 정부는 발전회사 및 수송용 수소제조사에게 한국가스공사와 직접 거래 및 도매가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경우 천연가스시장은 이미 완전히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2호에 '라. 산업용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원료용 도시가스에 한하여 (연료용은 제외)' 목을 추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적용되는 사용자를 추가하기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2호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2. ISO 14025에 준한 EPD에 국내 인정

환경성제품(EPD)는 ISO 14025에 따라 정의된 내용으로 Underwriter Laboratories (UL)에서 발행하는 EPD가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 중입니다. LEEDS, BREEAM 인증 등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기준자료로 적용 중이며,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환경성 평가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 한국은 EPD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G-SEED 내에서는 국내인증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ISO 14025에 준한 EPD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이 G-SEED 환경성 제품의 사용 항목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인증 검토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PD 와 UL EPD의 요건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제품을 생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며, 위의 두 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UL EPD에 따라 국제기관에서 검토한 평가 결과가 국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규정 G-SEED – 3.1 환경성제품(EPD)의 사용

관련부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해상 풍력터빈 인증 시 IEC 인증 허용
현재 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터빈 인증제도에는 '로터, 나셀 조립체 (RNA) 구성 요소 인증'의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RNA만 인증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공단의 KS 인증에서는 타워 구조까지 인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특성상, 동일한 풍력발전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단지 내의 풍력발전설비라고 하더라도, 수심이나 여러 환경 조건, 배치 그리고 해저 지질에 따른 계류 방법에 따라 기기별 하부 구조물 및 타워의 제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워와 하부구조물을 포함한 전체를 KS 인증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국내에서 1년 동안 파일럿 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IEC 인증을 받은 터빈에 대해 IEC 인증절차 때 사용한 문서와 데이터를 국내 인증 진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계획된 해상용 터빈의 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IEC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RNA 인증서를 인정하여, 국내 KS 인증 절차를 면제 혹은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상용 터빈에 대해서는 시험용 파일럿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IEC 인증당시 사용했던 문서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업무규정

관련부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육/해상 풍력 발전의 장기고정가격 전력수급계약(PPA) 절차 개선
현재까지 풍력발전을 건설할 때는 발전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하고, SPC와 수의계약(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발전공기업이 SPC에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비용적정성평가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RPS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발전 공기업과 SPC간의 고정가격계약 단가를 정합니다.

위 절차에서 자본적 지출(CAPEX) 및 운영경비(OPEX) 검증은 좋은 취지이나 풍황이 좋은 발전단지는 낮은 PPA 가격을 그리고 풍황이 나쁜 단지는 높은 PPA 가격을 승인하여 시장에 사업성을 일정수준으로 맞추는 듯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산터빈에 대해서만 국내 산업기여도를 책정하여 전력구매계약(PPA) 금액을 승인하는 절차가 한국에너지공단 RPS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 조달 터빈에는 적용 하지 않는 사항으로 외산터빈과 국내기업 터빈 간의 PPA 금액 차별로 귀결됩니다.

실제 전력거래소가 분석한 2021년 풍력발전 사업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육상풍력의 경우 수익의 적정성 기준에 있어 국산터빈과 외산터빈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CAPEX (백만원/MW)	발전단가 (LCOE) (원/kWh)	SMP (원/kWh)	1REC (원/kWh)	SMP+1REC (원/kWh)
국산	2,568	163.3	81.91	81.4	163.3
외산	2,313	147.1	81.91	65.2	147.1

건의사항
CAPEX 및 OPEX에 대한 검증은 하되, 각 발전단지 별 풍황에 따른 PPA 가격산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전단지의 규모 및 공사규모 등에 따라 CAPEX 및 OPEX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PA 가격을 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 운영위원회에서 PPA 적정성 검토 시, 외산터빈에 대해서만 국내풍력산업 기여도(국산화 비율)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기업의 터빈에도 적용하거나 폐지하고, 국내기업 터빈에 대한 PPA 가격을 추가 산정하는 등의 차별을 폐지하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1-8호)

관련부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5. 직접 PPA시 REC 가중치 적용 개선

발전자회사 출자 시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과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공급한 전력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RE100을 이행하는 경우 에너지원과 무관하게 가중치가 '1'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해상풍력을 장려하기 위해 해상풍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PPA를 체결하기 위해 REC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일부를 포기하거나, 전력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전체 REC를 고려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정책 의도와 달리 해상풍력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하여 공급한 전력에 대해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적용된 가중치 '1'을 제외한 만큼은 RE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풍력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자원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육/해상 풍력발전 시 일관성 있는 민원해결 가이드 마련

육/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민원해결에 대한 통합 가이드 부재로 인해 무분별한 민원요청 및 반발이 빈번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지연 및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안 인근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과 달리 주변에서 어장을 설치하여 고정으로 조업하는 어민이 없고, 연근해 어업 허가가 있으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EEZ에서 조업하는 어민 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까지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확인하고 협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진정한 이해관계자임을 주장하여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건의사항

육/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역주민 및 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 프로젝트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마을과 건축물, 또는 수협 등에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최소 3-5년 이상 해당 수역에서 조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어민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하며 적어도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했다면 관련 허가(예,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등)를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통합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육상풍력은 발전단지 1km 이내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7. 탄력성 있는 연료사용 및 효율 증대를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청정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열병합발전용으로 적용된 가스터빈은 주로 제조부문 및 지역 냉난방 부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은 수소, 암모니아, 중유, 고불활성연료 혹은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에 적합합니다. 특히

가스터빈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은 탄력성 있는 연료 활용을 가능케 하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발전기를 전통적인 연료(디젤 및 천연가스)로부터 100% 차세대 청정연료인 수소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도 CO2 배출을 감소시킴.
- 연료 수입을 최소화하도록 주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 및 공정산업 부문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전체 플랜트 효율이 90%에 이르게 하여 CO2 배출을 감소시킴.
- 생산업체로 하여금 분산발전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을 다양화 및 국지화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하며, 생산업계의 비용구조를 줄여 낮은 에너지 단가를 확보하게 함.
- 유럽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경조정기구를 통한 생애동안의 공해배출 기준 특정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이 소개될 경우에도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함.

하지만, 현재의 탄소배출거래제 및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은 다른 발전원보다 더 우대받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가스터빈을 통한 열병합발전 용량을 일반적으로 생산분야에서 사용되는 최대 용량인 60MW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며 신규로 가스터빈을 통한 열병합발전소 설치 시 검증된 공장 에너지 프로필 기준 및 시스템 효율 대비 최소 10% 에너지 절감을 제공하는 경우로 정부가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생산분야에서 60MW 미만 용량의 가스터빈을 통한 열병합발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조금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자본금 지출에 대한 투자세금 충당
- 수입된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수입세 면제
- 패키지 보일러와 같은 재래장비에 대한 내용보다 유리한 천연가스 관세
- 사전허용 및 일괄적용 면허체계

유럽은 1980년대부터 열병합발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체제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오늘날 EU 15개 주요국가에서 열병합발전은 약 18%의 총 발전량에 이바지하고 열병합발전을 적용할 수 있는 총 발전량의 비중은 20-25% 정도에 해당합니다.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8.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규제 완화 (RI 라이선스 허용 범위 확대)

현 규정상, 방사선발생장치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SRI 면허 보유자 고용이 필수입니다.

1) 1MeV 이상인 경우
2) 최대 사용전압 350kV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kV 5mA 1대 이상인 경우
3) 최대 사용전압 350kV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kV 5mA 2대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 누설기준 등 방사선발생장치 관리기준 및 사고발생시 조치 사항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지만, 단지 사용전압 및 최대 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SRI 또는 RI 면허자 고용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기준 표면 10cm 거리에서 방사선 누설선량10uSv/h 동일: 350kV 5mA 1대 (SRI) = 250kV 5mA 1대 (RI)
- 1m 거리에서 방사선발생장치 250kV/5mA 1대의 비정상 취급 시 종사자 연간선량 한도: 20mSv 초과
- 비정상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 방사선 노출 위험시 조치 사항 동일
- 안전관리 측면 일반면허 및 감독면허 소지자와 안전조치 및 관리 차이 없음

건의사항

성장 산업의 선도기술 도입 촉진 위해 X-ray 장비 운영을 위한 RI 면허 보유자 요구 조건을 국제 수준과 부합하는 1MeV 미만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경력 및 의무교육 조항을 보완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및 제84조 /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3 및 제83조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주요이슈

1.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자간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

한국의 모든 금융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벤더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기 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CSP)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SP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CSP가 VPN 전용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네트워크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CSP 체크리스트의 네트워크 보안 중 네트워크 암호화 부분).

일반적으로 공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SaaS) 제공 업체는 전용선 또는 VPN이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선 또는 VP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SP가 비공개 연결을 지원 하는 경우 고객은 SaaS와 관련된 특정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진정한 SaaS가 아닙니다. 비공개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CSP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규정으로 한국 금융 회사는 SaaS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건의사항

금융 회사와 CSP 간의 전용 VPN 라인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사항 제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2. 정부 ISP 프로젝트 기획, 개발, 제출을 위한 시스템 및 견본 구조

ISP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에 있어 기존에 정부가 요구한 사업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찰하는 컨소시엄에 명목적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계획 요구 항목)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작업사례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데, (개별기관/지원 유닛) 행정지원 시스템은 다른 유관부처, 사기업 등 민간분야조직 그리고 타 공공기관 등에서 e-system인 ISP를 통해 행정처리 결과를 '패스트 트랙킹'을 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도급 계약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ISP 제출 구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대한 고려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최소 2000페이지 조건과 제한적인 템플릿, 문서형식 등의 사용이 제출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또한, 중복 정보를 생성하고 조직적 자원을 남용 또는 과보상한다고 진단하는 사례조사가 최소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실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ICT시스템 담당 부서는, ISP 아키텍쳐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핵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태이며, 디지털 정보화 변환 및 새로운 ISP 구조의 밑그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SP와 새로운 법률의 복잡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잘 알려져 있고 진취적이지만, 정부 디지털 혁신의 맥락에서 '통제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정책과 운영방식이 건의된 대로 수정된다면 ISP주도 프로젝트 실사의 경우 해당 컨소시엄에 주어지는 기존 제약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기존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이 통합된 방식으로 ISP의 방대하고 복잡한 컨텍스트를 처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기존 정부입법통합시스템에 추가적인 자원, 특히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ISP 관련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간결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식행위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존보다 비제한적인 서식 지침을 컨소시엄에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해외와 공공분야 간의 보다 실행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ISP 개발 및 진전된 지정학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파트너십 공동 구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ICT 디지털 변환 및 ICT 주도 지정학적 문제 해결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특정 인력을 정보화 전략계획(ISP)과 업무과정 재설계(BPR) 분야에 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정보화업무재설계 (BPR) / 정부입법통합시스템(GLIS) / 정보전략 계획 (ISP)시스템

관련부처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유관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에 한하여 중앙정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G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 전용 클라우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의 보안인증 (CSAP)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KISA의 보안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23개로 전부 국내회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CSAP의 경우 필수인력의 국내 상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에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ECCK는 CSAP의 주된 동기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국외에 주재하는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최신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면 분명 동일한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보안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클라우드 보안규정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주체의 국내 상주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국외 주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진흥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권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강제

조항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웹시스템에만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자바 기반으로 개발되지 않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현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의 조건을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 지침으로의 격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 언어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급속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바 이외의 개발언어에 대한 적용배제를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공공기관의 외국계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도입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위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ICT 분야의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자사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기관과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또는 발주처와 공급업체 간 계약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면 도입원가 절감 및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사항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강제 적용의 탄력적인 운용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공급업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발주 행정기관에서 탄력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6. 이동통신 주파수에서의 활용기술의 중립

현재 이동통신 사업용 주파수는 할당 시 기술 방식 (예, 3G, 4G, 5G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3G, 4G, 5G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5G로의 세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용 장비나 단말의 경우 3G, 4G, 5G 서로 다른 대역과 기술을 모두 수용하도록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4G 주파수 대역에서 5G를 동시에 지원하는 동적 주파수 공유기술(DSS: Dynamic Spectrum Sharing)이 상용화되어 4G 주파수의 효율적인 5G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종속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은 주파수 활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진화된 기술 사용을 제한할 염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서의 기술 방식을 중립적으로 정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조세워킹그룹

김시윤
과장,
조세 워킹그룹

주요이슈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관으로 인정되는 단체(투자단체)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마련 필요

법인세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의 도입으로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판정의 특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외투자기구의 정의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정의와 유사한 정의로만 규정되고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엄격하게 보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단체 (investment entity)의 경우 국외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규정은 국외투자기구를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정의와 유사한 정의로서, 국외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만 이 법조항이 적용되고, 형식상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투자단체의 경우 이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도관인 투자단체도 국외투자기구로 보아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종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중간에 위치한 특정 투자단체가 세법 정의 상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단체는 국외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 결론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인 국외투자기구 외에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단체가 투자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에 대해서 본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최종 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법인세법 제93조의 2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국외투자기구의 정의를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 투자와 지분 소유를 목적으로 국외에 설립된 단체 및 이와 유사한 국외 투자단체)'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98조의 4, 제98조의 6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외국법무법인의 비거주자 파트너 관련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및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외국법무법인의 경우, 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구성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세당국/외국법무법인 입장에선 전 세계의 수백명의 비거주자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준수하게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 및 행정적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영국의 경우, 파트너십의 거주자 파트너로 하여금 모든 비거주자 파트너들을 대리하여 single (composite)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영국 국세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국 주정부는 파트너십으로 하여금 비거주자 파트너들을 대리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백명의 비거주자 파트너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대표 거주자 파트너 1인이 각 비거주자 파트너를 대리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 합계표 제출 및 구성원의 납부세액을 일괄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1명당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및 900만원 (대학생)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공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 개정을 건 의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59조의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2조 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법인 유형 판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세무상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하여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의 간소화

사전상담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해 납세자와 APA 실무팀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사전상담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나, 납세자와 국세청이 사전상담을 통해 APA의 향후 진행계획, 주요 쟁점, APA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의 주요 목적은 APA의 일반적 진행과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국세청이 APA 신청 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전상담 과정이 매우 더디고, 어떤 경우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신규 건들은 많고 국세청 내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전상담 일정 조율이 매우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설령 납세자가 한 번의 사전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2차 또는

3차 사전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PA 신청 이후 협의 기간이 최소 2년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사전상담 과정까지 거치면 전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사전상담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보니 법규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APA 연차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설명내용과 현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보다 더 명확한 사전상담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원활한 사전상담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인력을 보충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자가 APA 신청 접수 시점을 예상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6.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사택 제공 관련 이익이 기존에는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었으나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 받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택 제공 관련 이익이 오히려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칙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해당 개정 사항을 적용함을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급격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의 개정 취지는 과세대상 확대 목적이 아니라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 급여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도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사택 제공 이익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세하게 되며, 단일세율의 취지가 고급인력 유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 실효성 상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단일세율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7.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보세화물의 관세 면제요건 신설
현행 관세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관세징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하여 보세화물이 소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납세자가 관세징수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제기하여 화재가 방화나 흡연 등 인적 부주의로 발생되지 않은 사실 등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건의사항
보세구역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멸실된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160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

8. 면세점에서 반품되어 수입통관되는 면세품에 대한 관세 감경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보세화물 상태로 면세점에 납품된 후 시즌이 경과되어 상품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국내 아웃렛 스토어에서 할인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될 때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로부터 핸드백을 1,000유로에 수입하여 면세점 업자에게 1,500유로에 판매한 경우, 수입자가 2년 후 상품 가치가 저하된 동 핸드백을 면세점으로부터 수입통관할 때 동일 수출자로부터 동일 핸드백을 아웃렛 스토어 판매용으로 500유로에 구매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음에도, 관세법은 수입통관 시 최초 구매가격인 1,000유로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자가 동 면세 핸드백을 외국 수출자에 반품한 후 다시 수입하면서 500유로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500유로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자는 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면세품을 정상가격으로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반송한 후 다시 수입하는 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수입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하여 환불받고 상품의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격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면세품이 해외로 반송되어 재수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신설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줄임말

줄임말	국문
ABV	알코올 도수
APA	사전승인제도
ATP	실거래가
CAPEX	자본적 지출
CBI	영업비밀
CHP	열병합발전용
CITL	법인세법
COVID-19	코로나19
CRO	위탁임상시험기관
CSAP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
CS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DREC	약제급여평가위원회
DSS	동적 주파수 공유기술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EZ	배타적 경제수역
EMS	국제우편물
EPD	환경성제품
EPI	예방접종 확대 사업
FAS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
FP	조성물
FRAND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인
GMO	유전자변형식품
HCP	의료전문가
HES	중·대형차 배출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국내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
HRQOL	건강 관련 삶의 질
HRS	수소충전소
HST	고도 전문 기술
HTA	의료기술평가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EC	국제전기표준회의
IoT	사물 인터넷
IPC	혁신형제약기업

줄임말	국문
ISO	국제기준위원회
ISP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K-BP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품안전법)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K-REACH	화평법
KC	국가통합인증
KOSHA	산업안전보건법
KPX	한국전력거래소
LNG	액화천연가스
LOC	확인서
LPG	석유액화가스
LR	공동등록
MNC	다국적 기업
MoU	양해각서
MRA	상호인증협정
NIP	국가예방접종사업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IV	국외투자기구
OPEX	운영 경비
OR	유일대리인
PCR	생분해성
PE	약물 경제성 평가
PIC/s	의약품 상호실사협력기구
PL	제조물배상책임
PPA	전력수급계약
PPA	전력수급계약
PVA	사용량 약가연동제
QC	품질 검사
QSM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M	제조자개발생산
RNA	로터, 나셀 조립체

줄임말	국문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SA	위험분담계약제
SEP	표준특허
SPC	특수목적법인
STTCL	조세특례제한법
TBT	무역기술장벽
UL	국제 시험 인증기관
VECTO	차량 에너지 소비 계산 도구

줄임말	국문
MOLIT	국토교통부
DAPA	방위사업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FSS	금융감독원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S	관세청
KDCA	질병관리청
KEA	한국에너지공단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FTC	공정거래위원회
KHIDI	보건산업진흥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PO	특허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E	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OEF	기획재정부
MOEF	기획재정부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HW	보건복지부
MOIS	행정안전부
MOLEG	법제처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S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줄임말	국문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IER	국립환경과학원고시
NSSC	원자력안전위원회
NTS	국세청
OSHRI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CIP	국가지식재산위원회
QIA	농림축산검역본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입니다. ECCK는 유럽 및 한국기업과 기관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공정하고 열린 비지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간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적 기관입니다.

- ECCK는 한국 정부 및 주요기관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부부처, 경제단체 및 언론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 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ECCK는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을 통해 시장상황, 규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럽계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서 ECCK는 백서, 비즈니스환경조사, 리포트 및 잡지와 뉴스레터 등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여 배포합니다.

- 회원사들은 ECCK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ECCK는 한국을 찾는 유럽 정부인사나 기업인들을 위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ECCK 웹사이트 www.ecck.or.kr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ecck@ecck.or.kr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